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제2860호 2022. 9. 2.(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7호 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 세목 고시 ······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9호 사방지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	31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5호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34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6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7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8호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68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격포낚시어선구조협회) ·······	100
드고나 기사사회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8. 26.(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01
시 군	
●	102
○ 군산시 고시 제2022-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9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07
○ 군산시 고시 제2022-1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11
○ 군산시 고시 제2022-14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지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117
○ 익산시 공고 제2022-241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120
○ 익산시 공고 제2022-24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122
○ 정읍시 공고 제2022-1173호 고창∼내장IC(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125
○ 김제시 고시 제2022-89호 김제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실효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28
○ 임실군 고시 제2022-64호 사선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고시 ···································	152

# 기 타

0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2호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55
0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3호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61
0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4호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66
0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5호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71
0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6호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76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고시 2022-207호

### 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 세목 고시

전라북도 고시 2021-281호 고시된 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2일

- 1. 사 업 명: 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위 치: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일원
- 3. 사업목적 :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재구축 및 재설치를 통해 재해예방,
  -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4. 수혜면적 : 41ha
- 5. 사업개요: 저수지 재설치 1개소
  - 저수지 제체 재설치, 여방수로 재설치, 취수시설 재설치 등
- 6. 사업기간 : 2021. 08 ~ 2024. 12.(3개년)
- 7. 총사업비 : 5,382백만원
- 8.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전화:063-560-1552)
-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Ī	E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비고
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30	답	1,388.0	29.5	강대원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양사2길 13				
2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30	임	1,388.0	1,388.0	강대원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양사2길 13				
3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0-1	답	16,879.0	1,138.1	강대원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양사2길 13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37-2	답	3,104.0	3,104.0	강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38-36				당초
4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37-2	답	3,104.0	3,104.0	강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38-36	강성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수원한일타운 아파트 121동 801호	가등기	변경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산29	임	7,934.0	405.4	강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50-5(중흥동)				당초
5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산29-1	임	407.0	407.0	강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50-5(중흥동)	강성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수원한일타운 아파트 121동 801호	가등기	변경
6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53	답	2,651.0	1,237.4	강맹열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2길 23-3				
7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4	답	718.0	718.0	한용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양사1길 15				
8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0	답	2,655.0	2,655.0	김계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5				
9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2	답	311.0	311.0	김계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5				
10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61	답	532.0	532.0	김계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5				
1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37	임	1,587.0	122.1	김근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996 주공그런빌 102-1602				
12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88	임	2,579.0	978.6	김근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996 주공그런빌 102-1602				
13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56	답	321.0	314.6	김방호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14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42	답	2,071.7	408.5	김방호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15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44	구거	108.0	108.0	김석선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16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1	전	149.0	149.0	김옥현	사정 토지				

				면	적	5	트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 <sup>i</sup> )	편입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н) <u>э</u>
17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37-1	답	3,716.0	3,716.0	박성재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18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37-3	답	1,967.0	1,967.0	박성재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19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39	답	1,388.0	1,388.0	박성재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20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66	임	9,607.0	4,007.8	오시중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산29				
2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4-1	답	1,986.0	1,986.0	유종화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양판길 23-13				
22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3-3	임	11,950.0	296.2	이상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고성촌길 1				
23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36	임	1,190.0	378.6	이정자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79-1				
24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65	임	10,042.0	2,242.4	이종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25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30	전	6,451.0	1,367.7	이종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26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65-1	임	1,255.0	356.0	이종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84				
27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3	임	13,646.0	1,233.9	공춘식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양사로 283-8				
28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67	임	6,744.0	1,558.8	정재길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				
29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87	임	27,525.0	4,096.5	창녕성씨 통덕랑파 택진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694				
30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54	전	1,587.0	227.8	최인식	서울 도봉구 번동 462-5				
3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55	임	258.0	228.6	최인식	서울 도봉구 번동 462-5				
32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38	답	1,534.0	1,534.0	한혜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103동 411호(온천마을제 일아파트)				
33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3	답	3,709.0	944.3	한혜진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로 52 106동 1202호 (지곡동 서희스타힐스)				
34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35	임	39,174.0	333.7	해주오씨 우후공파 종중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645-8(637-11)				
35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4-2	답	1,065.0	134.2	해주오씨 우후공파 종중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645-8				
36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57	도	393.0	341.0	국(건설부)					

				면	적	토	트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비.
37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779	도	301.0	306.3	국(건설부)					
38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775	구	7,861.0	2,818.4	국(건설부)					
39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59	দ	155.0	155.0	국(건설부)					
40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780	도	218.0	218.0	국(건설부)					
4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55	도	1,786.0	201.1	국(건설부)					
42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62	구	88.0	88.0	국(농림부)					
43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47	유	3,491.0	3,491.0	국 (농수산부)					
44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49	<u>۴</u>	2,393.0	2,393.0	국 (농수산부)					
45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43	답	419.2	419.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6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65-2	임	4,075.0	4,075.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7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66-1	임	2,691.0	2,691.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8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45	유	2,447.0	2,447.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48	유	25,752.0	25,752.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0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860	유	12,880.0	12,880.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87-1	임	839.0	839.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14.>

###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0			MOHE .	W		-**
도면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면적 또는	공익사업의 종류	이용방법
표시번호	그 시시	72	물건의 종류	수량	및 토지관리자	NOOF
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산29-1	일시사용	40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021.9.1.
	200 000 929	E25 1	2110	407	강동구	~2022.1.31

#### 작성 방법

-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ㆍ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 2. 토지등이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해당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란에 적습니다.
- 3. 토지관리자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용방법"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a/m²]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8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 55호선, 지방도 635호선, 지방도 795호선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정비를 위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일 전라북도지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m')	기점	중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m)
기정	국지도	55	해남~금 산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일원	2,297	주천면 주양리 441-2번지	주천면 주양리 639번지	_	179
변경	국지도	55	해남~금 산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일원	1,871	주천면 주양리 441-2번지	주천면 주양리 639번지	_	179
기정	지방도	635	계북 ~ 대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일원	48,869	동향면 학선리 93-2번지	동향면 학선리 893-6번지	-	2,590
변경	지방도	635	계북 ~ 대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일원	35,595	동향면 학선리 93-2번지	동향면 학선리 893-6번지	_	2,590
기정	지방도	795	진안 용담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일원	9,839	정천면 모정리 1363-3번지	정천면 모정리 산189-30번지	_	95
변경	지방도	795	진안 ~ 용담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일원	8,826	정천면 모정리 산330-4번지	정천면 모정리 산189-30번지	-	95

-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ㅇ 도로 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구역 제척 및 등재 오류수정 등
-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라. 도면의 열람장소

열람장소: 전라북도 도로교통과(063-280-4403)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 가. 지방도 635호선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635	노선명	계북 ~ 대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군 동향면 학선		·군 동향면 학식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 <sub>行</sub> - 미관(美觀)의 훼		대한 위험 방	지	
비고					

#### 나. 지방도 795호선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95	노선명	진안 ~ 용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진안 - 범 위 : 도로				모정리 산189-8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行 - 미관(美觀)의 훼·		대한 위험 방	지	
비고					

#### 3.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 실음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서 열람 가능

### 【붙 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1. 국지도55호선(주천면 주양리)

연번			토지 소	└재지		지적 면적	3	E로구역 (	m²)	소유자	
컨텐	시	면	리	지번	지목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ξ	합 계			11,640	2,297	1,871	감)426		
1	진안	주천	주양	465-3	대	242	71	0	감)71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	박**
2	진안	주천	주양	639	দ	1,690	302	264	감)38		국(건설교통부)
3	진안	주천	주양	436-1	대	89	18	0	감)18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	% <sup>‡</sup> **
4	진안	주천	주양	436-2	도	63	63	47	감)16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	ુદે∗*
5	진안	주천	주양	436-3	대	129	14	0	감)14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	% <sup>E</sup> **
6	진안	주천	주양	437-2	도	178	168	149	감)19	진안읍 군상리 ***	근**
7	진안	주천	주양	437-9	대	225	16	0	감)16	주양리 ***	인**
8	진안	주천	주양	437-10	대	836	12	0	감)12		진안군
9	진안	주천	주양	438-1	대	13	13	0	감)13	경기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	김**
10	진안	주천	주양	438-2	도	526	463	437	감)26	경기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	김**
11	진안	주천	주양	439-2	도	291	291	286	감)5	주양리 ***	0]**
12	진안	주천	주양	437-3	대	4,402	94	12	감)82		진안군
13	진안	주천	주양	437-4	도	175	175	174	감)1	진안읍 군상리 ***	문**
14	진안	주천	주양	440-1	대	1,238	33	0	감)33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	진안농업협동 조합
15	진안	주천	주양	440-2	도	225	225	205	감)20	주양리 ***	0]**
16	진안	주천	주양	442-1	대	373	16	0	감)16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	진안농업협동 조합
17	진안	주천	주양	441-2	도	329	321	297	감)24		진안군
18	진안	주천	주양	442-4	대	616	2	0	감)2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	ひ**

보

도

# 2. 지방도 635호선(동향면 학선리)

Alul		,	토지 소	는재지		지적	7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ξ	합 계			335,944	48,869	35,595	감)13,274		
1	진안	동향	학선	62-2	도	7	7	7	0		진안군
2	진안	동향	학선	63-2	도	86	86	86	0		진안군
3	진안	동향	학선	63-3	도	30	30	30	0		진안군
4	진안	동향	학선	72-2	도	30	30	30	0		진안군
5	진안	동향	학선	73-3	도	50	50	50	0		진안군
6	진안	동향	학선	73-4	도	13	13	13	0		진안군
7	진안	동향	학선	73-5	전	27	27	27	0		진안군
8	진안	동향	학선	91-1	답	212	87	0	감)8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70 ***	김**
9	진안	동향	학선	91-3	도	38	38	38	0		진안군
10	진안	동향	학선	92-1	전	50	50	50	0		진안군
11	진안	동향	학선	92-2	도	73	73	73	0		진안군
12	진안	동향	학선	92-3	대	1,163	286	0	감)286	학선리 ***	바**
13	진안	동향	학선	92-4	도	33	33	33	0		진안군

۸۱۰۰۱			토지 4	 논재지		지적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14	진안	동향	학선	92-6	도	13	13	13	0		진안군	
15	진안	동향	학선	93-1	하	199	50	0	감)50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	0]**	
16	진안	동향	학선	93-2	도	50	50	50	0		진안군	
17	진안	동향	학선	93-4	도	72	72	72	0		진안군	
18	진안	동향	학선	176-2	도	17	2	0	감)2		진안군	
19	진안	동향	학선	176-3	P <sub>o</sub>	221	52	0	감)52	학선리 ***	김**	
20	진안	동향	학선	176-4	답	4	4	4	0		진안군	
21	진안	동향	학선	283-1	답	1,670	147	0	감)147	학선리 ***	김**	
22	진안	동향	학선	283-4	답	135	135	135	0		진안군	
23	진안	동향	학선	285-1	대	149	55	0	감)55	학선리 ***	서**	
24	진안	동향	학선	285-2	도	10	9	0	감)9		진안군	
25	진안	동향	학선	285-3	도	10	10	10	0		진안군	
26	진안	동향	학선	293-2	도	63	51	0	감)51		진안군	
27	진안	동향	학선	294-2	도	89	89	89	0		진안군	

۸۱۰۰۱			토지 4	 논재지		지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28	진안	동향	학선	308-5	도	7	7	7	0		진안군
29	진안	동향	학선	309-2	도	43	43	43	0		진안군
30	진안	동향	학선	309-3	도	30	30	30	0		진안군
31	진안	동향	학선	309-4	답	830	830	830	0		진안군
32	진안	동향	학선	310-2	도	46	46	46	0		진안군
33	진안	동향	학선	310-3	도	13	13	13	0		진안군
34	진안	동향	학선	310-4	학	755	755	755	0		진안군
35	진안	동향	학선	311-3	도	30	30	30	0		진안군
36	진안	동향	학선	317-2	도	40	40	40	0		진안군
37	진안	동향	학선	317-3	도	69	69	69	0		진안군
38	진안	동향	학선	318-1	임	481	221	0	감)221		진안군
39	진안	동향	학선	318-2	도	33	33	33	0		진안군
40	진안	동향	학선	318-3	도	50	50	50	0		진안군
41	진안	동향	학선	318-5	임	136	136	136	0		진안군

			토지 :	소재지		<u>지</u> 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42	진안	동향	학선	319-1	전	588	72	0	감)72	학선리 ***	심**
43	진안	동향	학선	319-2	노	10	10	10	0		진안군
44	진안	동향	학선	322-2	도	3	3	3	0	학선리 ***	김**
45	진안	동향	학선	325-2	보	79	79	79	0		진안군
46	진안	동향	학선	325-3	답	3	3	3	0	학선리 ***	심**
47	진안	동향	학선	326-3	도	33	33	33	0		진안군
48	진안	동향	학선	326-4	দ	7	7	7	0		진안군
49	진안	동향	학선	326-5	দ	60	60	60	0		진안군
50	진안	동향	학선	326-7	도	66	66	66	0		진안군
51	진안	동향	학선	329-3	보	7	7	7	0		전라북도
52	진안	동향	학선	332	ᄕᅭ	88	88	88	0		진안군
53	진안	동향	학선	333	답	67	19	6	감)13		전라북도
54	진안	동향	학선	333-2	답	21	21	21	0		진안군
55	진안	동향	학선	397-2	도	179	179	179	0		진안군

٠٠.٠١			토지 :	소재지		<u>지</u> 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56	진안	동향	학선	397-3	도	122	122	122	0		진안군
57	진안	동향	학선	398-1	도	149	149	149	0		진안군
58	진안	동향	학선	398-2	도	76	76	76	0		진안군
59	진안	동향	학선	398-3	임	23	23	23	0	학선리 ***	심**
60	진안	동향	학선	398-4	임	40	40	40	0	학선리 ***	심**
61	진안	동향	학선	402-2	도	526	3,545	3,492	감)53		진안군
62	진안	동향	학선	409-6	전	132	78	0	감)78	학선리 ***	심**
63	진안	동향	학선	410-5	전	312	93	0	감)93	학선리 ***	심**
64	진안	동향	학선	412-1	전	302	124	0	감)124	학선리 ***	김**
65	진안	동향	학선	413-1	전	298	138	0	감)138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	<del>^</del> **
66	진안	동향	학선	413-2	도	7	7	0	감)7		진안군
67	진안	동향	학선	413-4	전	214	214	214	0		진안군
68	진안	동향	학선	419-1	전	90	90	74	감)16		진안군
69	진안	동향	학선	419-2	도	60	60	21	감)39		진안군

			토지 4	 - 		<u> </u>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70	진안	동향	학선	420-2	도	26	26	26	0		진안군
71	진안	동향	학선	421-2	도	86	86	86	0	학선리 ***	심**
72	진안	동향	학선	422-3	도	17	17	17	0		진안군
73	진안	동향	학선	423-2	도	7	7	7	0		진안군
74	진안	동향	학선	424-2	도	10	10	10	0	학선리 ***	최**
75	진안	동향	학선	427-2	도	20	20	20	0		진안군
76	진안	동향	학선	436-4	도	40	40	40	0		진안군
77	진안	동향	학선	436-5	도	3	3	3	0		진안군
78	진안	동향	학선	437-2	도	89	89	89	0		진안군
79	진안	동향	학선	438-2	도	3	3	3	0		진안군
80	진안	동향	학선	440-2	도	17	17	17	0		진안군
81	진안	동향	학선	441-1	답	133	133	133	0		진안군
82	진안	동향	학선	441-2	노	13	13	13	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4길 ***	황**
83	진안	동향	학선	442-2	답	107	107	107	0		진안군

			토지 4	 는재지		진적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84	진안	동향	학선	445-3	도	26	26	26	0		진안군
85	진안	동향	학선	474-2	도	23	23	23	0		진안군
86	진안	동향	학선	474-3	도	23	23	23	0		진안군
87	진안	동향	학선	474-4	전	66	66	66	0		진안군
88	진안	동향	학선	474-5	전	193	193	193	0		진안군
89	진안	동향	학선	475-2	도	46	46	46	0	학선리 ***	<u>^</u> **
90	진안	동향	학선	475-3	전	215	215	215	0		진안군
91	진안	동향	학선	476-2	도	60	60	60	0	학선리 ***	0]**
92	진안	동향	학선	476-3	전	118	118	118	0		진안군
93	진안	동향	학선	478-2	도	30	30	30	0		진안군
94	진안	동향	학선	478-3	전	66	66	66	0		진안군
95	진안	동향	학선	479-2	도	10	10	10	0		진안군
96	진안	동향	학선	479-3	노	13	13	13	0		진안군
97	진안	동향	학선	480-2	도	3	3	3	0		진안군

٠٠٠١			토지 4	 노재지		<u> </u> 직적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98	진안	동향	학선	480-3	도	17	17	17	0		진안군
99	진안	동향	학선	482-3	도	43	43	27	감)16		진안군
100	진안	동향	학선	484-2	도	23	16	16	0		국(국세청
101	진안	동향	학선	484-3	대	78	63	0	감)63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	인**
102	진안	동향	학선	484-4	대	428	108	0	감)10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	인**
103	진안	동향	학선	484-6	대	30	30	30	0		진안군
104	진안	동향	학선	484-7	대	144	144	144	0		진안군
105	진안	동향	학선	484-8	대	157	157	143	감)14		진안군
106	진안	동향	학선	484-9	대	25	25	0	감)25		진안군
107	진안	동향	학선	485-2	도	3	3	1	감)2	학선리 ***	송**
108	진안	동향	학선	485-3	대	245	245	207	감)38		진안군
109	진안	동향	학선	492-5	전	254	254	254	0		진안군
110	진안	동향	학선	493-2	또	7	7	7	0	학선리 ***	0]**
111	진안	동향	학선	493-3	도	53	53	53	0		진안군

۸۱۰۰۱			토지 4	· 소재지		<u>지</u> 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112	진안	동향	학선	494-5	전	49	49	49	0		진안군
113	진안	동향	학선	497-3	도	255	98	98	0		진안군
114	진안	동향	학선	673-1	임	304	304	304	0		진안군
115	진안	동향	학선	675-2	도	126	126	126	0		진안군
116	진안	동향	학선	675-3	하	198	98	0	감)98		전라북도
117	진안	동향	학선	675-4	전	217	217	217	0		진안군
118	진안	동향	학선	675-5	전	60	60	60	0		진안군
119	진안	동향	학선	676-2	하	74	71	0	감)71		전라북도
120	진안	동향	학선	676-3	도	228	228	228	0	전주시 금암동 ***	김**
121	진안	동향	학선	676-4	전	83	83	83	0		진안군
122	진안	동향	학선	676-5	도	7	7	7	0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	<del>^</del> **
123	진안	동향	학선	676-6	하	282	79	0	감)79		전라북도
124	진안	동향	학선	676-7	전	20	20	20	0		진안군
125	진안	동향	학선	676-8	전	421	421	421	0		진안군

۸۱۰۰۱			토지 :	소재지		지적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126	진안	동향	학선	676-9	하	73	73	73	0		진안군
127	진안	동향	학선	676-10	하	22	22	22	0		진안군
128	진안	동향	학선	676-11	하	43	20	0	감)20		전라북도
129	진안	동향	학선	676-12	하	65	65	65	0		진안군
130	진안	동향	학선	677-1	도	390	390	390	0		진안군
131	진안	동향	학선	677-2	답	96	90	0	감)90	학선리 ***	可**
132	진안	동향	학선	677-3	답	46	46	44	감)2		진안군
133	진안	동향	학선	677-6	답	35	35	35	0		진안군
134	진안	동향	학선	677-7	답	199	199	199	0		진안군
135	진안	동향	학선	677-10	답	177	25	0	감)25		전라북도
136	진안	동향	학선	678-1	하	122	122	122	0		진안군
137	진안	동향	학선	678-6	답	29	11	0	감)11	학선리 ***	빅**
138	진안	동향	학선	678-8	답	19	19	19	0	진안군 동향면 새울길 ***	송**
139	진안	동향	학선	678-9	하	470	470	470	0		진안군

			토지 :	소재지		지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140	진안	동향	학선	679-3	전	73	73	73	0		진안군
141	진안	동향	학선	684-3	도	192	192	192	0		진안군
142	진안	동향	학선	684-4	답	9	9	9	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송**
143	진안	동향	학선	684-6	답	98	98	98	0		진안군
144	진안	동향	학선	687-2	도	7	7	7	0	학선리 ***	송**
145	진안	동향	학선	688-2	도	33	33	33	0		진안군
146	진안	동향	학선	691-2	도	86	86	86	0		진안군
147	진안	동향	학선	696-3	도	60	60	60	0		진안군
148	진안	동향	학선	697-2	도	7	7	7	0		진안군
149	진안	동향	학선	698-3	도	3	3	3	0	<b>학선리</b> ∗∗∗	권**
150	진안	동향	학선	700-2	도	40	40	40	0		진안군
151	진안	동향	학선	700-3	답	309	309	309	0		진안군
152	진안	동향	학선	701-2	도	36	36	36	0		진안군
153	진안	동향	학선	701-3	답	66	66	66	0		진안군

			토지 :	소재지		직적	3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154	진안	동향	학선	709-2	도	10	10	10	0		진안군
155	진안	동향	학선	729-1	전	345	112	0	감)11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	안**
156	진안	동향	학선	729-3	전	102	102	68	감)34		진안군
157	진안	동향	학선	730-1	하	68	68	68	0	학선리 ***	허**
158	진안	동향	학선	731-2	도	43	11	11	0		진안군
159	진안	동향	학선	731-3	대	77	77	77	0	자산리 ***	न्}**
160	진안	동향	학선	732-1	대	55	55	0	감)5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	안**
161	진안	동향	학선	732-2	도	17	17	8	감)9		진안군
162	진안	동향	학선	732-3	대	124	124	41	감)83		진안군
163	진안	동향	학선	732-4	전	9	9	0	감)9		진안군
164	진안	동향	학선	733-2	도	129	7	0	감)7		진안군
165	진안	동향	학선	888-5	도	24	24	24	0	울산시 중구 남위동 ***	최**
166	진안	동향	학선	889-2	도	26	26	26	0		진안군
167	진안	동향	학선	893-6	답	700	700	700	0		진안군

۱۰۰۱			토지 :	소재지		지적 기적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3	٤	성 명
168	진안	동향	학선	894-4	냡	31	31	31	0			진안군
169	진안	동향	학선	1041	하	134,586	805	560	감)245			국(건설부)
170	진안	동향	학선	1041-14	하	7,578	319	247	감)72			국(건설부)
171	진안	동향	학선	1042	구	1,812	271	237	감)34		ā	구(농림축산식 품부)
172	진안	동향	학선	1044	灹	1,790	562	562	0		국	<del>'</del> (국토해양투
173	진안	챵	학선	1046	보	1,720	559	531	감)28		<b>국</b>	<del>'</del> (국토해양투
174	진안	동향	학선	1046-2	대	13	13	0	감)13			진안군
175	진안	동향	학선	1046-4	대	19	19	0	감)19			진안군
176	진안	동향	학선	1047	구	675	544	544	0		ā	구(농림축산4 품부)
177	진안	동향	학선	1047-3	구	732	353	333	감)20		ā	구(농림축산4 품부)
178	진안	동향	학선	1048	도	426	426	426	0		국	<del>'</del> (국토해양투
179	진안	동향	학선	1049	도	682	472	417	감)55		3	<del>'</del> (국토해양투
180	진안	동향	학선	1049-2	노	607	607	607	0		국	<del>'</del> (국토해양투
181	진안	동향	학선	1049-5	보	363	363	363	0		국	<del>'</del> (국토해양투

			토지 :	 소재지		 진적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182	진안	동향	학선	1050	도	2,724	99	51	감)48		국(국토해양부
183	진안	동향	학선	1056	도	1,735	143	118	감)25		국(국토해양부
184	진안	동향	학선	1056-7	도	21	3	3	0		국(국토해양부
185	진안	동향	학선	1056-8	하	364	77	0	감)77		국(건설부)
186	진안	동향	학선	1057	구	614	614	614	0		국(농림축산스 품부)
187	진안	동향	학선	1057-2	구	25	25	9	감)16		국(농림축산스 품부)
188	진안	동향	학선	1057-7	구	48	48	48	0		국(농림축산스 품부)
189	진안	동향	학선	1058	도	545	545	545	0		국(국토해양부
190	진안	동향	학선	1058-2	도	17	10	0	감)10		국(국토해양부
191	진안	동향	학선	1064	도	446	359	350	감)9		국(국토해양부
192	진안	동향	학선	1066-2	답	1,595	210	0	감)21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길**
193	진안	동향	학선	1066-3	답	196	196	196	0		진안군
194	진안	동향	학선	1067-3	답	1,282	405	0	감)405	학선리 ***	최**
195	진안	동향	학선	1067-4	답	14	14	14	0		진안군

			토지 :	소재지		지적	7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196	진안	동향	학선	1068-3	답	3,683	430	0	감)430	학선리 ***	심**
197	진안	동향	학선	1070	답	1,145	106	0	감)106	학선리 ***	전**
198	진안	동향	학선	1070-1	답	781	322	0	감)32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	최**
199	진안	동향	학선	1072-2	답	1,285	67	0	감)67	학선리 ***	최**
200	진안	동향	학선	1072-3	답	1,638	388	0	감)388	학선리 ***	전**
201	진안	동향	학선	1072-4	담	265	265	265	0		진안군
202	진안	동향	학선	1074-3	답	1,215	18	0	감)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	심**
203	진안	동향	학선	1074-4	답	970	120	0	감)120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	ਸ਼੍ਰੇ**
204	진안	동향	학선	1074-5	답	75	75	75	0		진안군
205	진안	동향	학선	1076-5	납	677	3	0	감)3	학선리 <b>*</b> **	심**
206	진안	동향	학선	1078-6	답	1,400	7	0	감)7	진안군 동향면 새울길 ***	김**
207	진안	동향	학선	1078-7	답	511	391	0	감)391	학선리 ***	심**
208	진안	동향	학선	1078-8	답	199	199	199	0		진안군
209	진안	동향	학선	1079-11	답	1,612	401	0	감)401	학선리 ***	심**

٠١-١١			토지 :	소재지		지적 면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m³)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210	진안	동향	학선	1079-13	답	25	25	25	0		진안군
211	진안	동향	학선	1080-8	답	2,532	374	0	감)374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강**
212	진안	동향	학선	1080-10	답	15	15	0	감)15		진안군
213	진안	동향	학선	1082	답	1,666	114	1	감)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	김**
214	진안	동향	학선	1082-3	답	13	13	13	0		진안군
215	진안	동향	학선	1084-1	슙	1,813	47	0	감)4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2 ***	न्।**
216	진안	동향	학선	1084-2	냡	1,036	332	0	감)33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2 ***	박**
217	진안	동향	학선	1084-3	냡	9	9	9	0		진안군
218	진안	동향	학선	1085-4	답	1,330	413	0	감)413	시홍시 정왕동 1849-6 ***	심**
219	진안	동향	학선	1085-5	냡	1,171	206	0	감)206	광주시 서구 광천동 ***	심**
220	진안	동향	학선	1085-6	답	361	361	361	0		진안군
221	진안	동향	학선	1085-7	답	55	55	55	0		진안군
222	진안	동향	학선	1086-6	답	145	145	145	0		진안군
223	진안	동향	학선	1086-10	답	109	90	0	감)90		진안군

١٠٠١م			토지 :	소재지		<u>지</u> 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224	진안	동향	학선	1086-11	답	111	87	0	감)87		진안군
225	진안	동향	학선	1088-5	답	289	289	289	0		진안군
226	진안	동향	학선	1088-6	답	98	98	98	0		진안군
227	진안	동향	학선	1089	답	1,658	285	0	감)28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	심**
228	진안	동향	학선	1089-2	답	150	150	150	0		진안군
229	진안	동향	학선	1090-6	답	294	294	294	0		진안군
230	진안	동향	학선	1091	답	1,255	393	0	감)393	울산시 동구 방어동 ***	심**
231	진안	동향	학선	1091-3	답	73	73	73	0		진안군
232	진안	동향	학선	1092-7	답	213	213	213	0		진안군
233	진안	동향	학선	1093	답	2,170	664	0	감)66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	김**
234	진안	챵	학선	1093-1	답	164	164	164	0		진안군
235	진안	동향	학선	1094-6	답	142	142	142	0		진안군
236	진안	동향	학선	1096	구	17,058	4,535	4,099	감)436		국(농림수산부
237	진안	동향	학선	1096-1	구	683	122	99	감)23		국(농림수산부

			토지 :			<u> </u>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238	진안	동향	학선	1097	F.	407	23	0	감)23		국(농림수산부
239	진안	동향	학선	1098	노	939	28	0	감)28		국(농림수산부
240	진안	동향	학선	1100	도	1,157	23	0	감)23		국(농림수산부
241	진안	동향	학선	1101	노	717	22	0	감)22		국(농림수산부
242	진안	동향	학선	1102	도	383	23	0	감)23		국(농림수산부
243	진안	동향	학선	1103	구	358	298	205	감)93		국(농림수산부
244	진안	동향	학선	1104	দ	5,785	3,546	3,245	감)301		국(농림수산부
245	진안	동향	학선	1104-5	대	224	2	0	감)2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7}**
246	진안	동향	학선	1105	구	236	28	28	0		국(농림수산부
247	진안	동향	학선	1106	구	4,491	217	114	감)103		국(농림수산부
248	진안	동향	학선	1106-2	구	268	6	6	0		국(농림수산부
249	진안	동향	학선	1106-5	구	718	18	18	0		국(농림수산부
250	진안	동향	학선	1107	구	586	25	25	0		국(농림수산부
251	진안	동향	학선	1121-3	답	542	62	0	감)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4길 ***	황**

A1-13			토지 :	소재지		지적	Ţ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252	진안	동향	학선	1122-3	답	475	61	0	감)61	진안군 동향면 새울길 ***	<b>*</b> **
253	진안	동향	학선	1123-3	답	276	54	0	감)54	진안군 동향면 새울길 ***	김**
254	진안	동향	학선	1124-3	답	208	64	0	감)64	학선리 ***	김**
255	진안	동향	학선	1125-3	답	146	63	0	감)63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ਹੋ∗∗
256	진안	동향	학선	1126-2	답	2,111	12	0	감)12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한**
257	진안	동향	학선	1126-5	답	222	145	0	감)145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한**
258	진안	동향	학선	1126-6	답	143	130	0	감)130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한**
259	진안	동향	학선	1127	답	1,700	56	0	감)56	학선리 ***	최**
260	진안	동향	학선	1127-3	답	67	67	0	감)67	학선리 ***	최**
261	진안	동향	학선	1128	납	1,433	58	0	감)58	대전시 서구 도마동 ***	박**
262	진안	동향	학선	1128-3	답	48	48	0	감)48	대전시 서구 도마동 ***	박**
263	진안	동향	학선	1129	답	880	35	0	감)35	학선리 ***	최**
264	진안	동향	학선	1129-3	답	30	30	0	감)30	학선리 ***	최**
265	진안	동향	학선	1130	답	1,427	50	0	감)50	학선리 ***	안**

보

٠٠٠١			토지 :	소재지		<u>지</u> 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266	진안	동향	학선	1130-3	답	42	42	0	감)42	학선리 ***	안**
267	진안	동향	학선	1131	답	2,464	92	0	감)92	학선리 ***	ōূ⊦**
268	진안	동향	학선	1131-4	답	81	81	0	감)81	학선리 ***	ō[∙∗∗
269	진안	동향	학선	1132	답	2,185	133	0	감)133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ᅙᅡ**
270	진안	동향	학선	1132-3	답	26	26	0	감)26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રે}∗∗
271	진안	동향	학선	1133	답	4,160	330	0	감)330	학선리 ***	강**
272	진안	동향	학선	1135	답	1,423	130	0	감)130	광주 광산구 비아동 152-5 ***	0]**
273	진안	동향	학선	1136	대	660	166	0	감)166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ਸ਼੍ਰੀ**
274	진안	동향	학선	1136-3	답	1,530	72	0	감)72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ਸ਼੍ਰੀ**
275	진안	동향	학선	1137	답	458	217	0	감)217	학선리 ***	펴**
276	진안	동향	학선	1138	답	945	308	8	감)300	학선리 ***	킹**
277	진안	동향	학선	1148	구	149	149	149	0		국(농림축산~ 품부)
278	진안	동향	학선	1151	구	277	277	277	0		국(농림축산* 품부)
279	진안	동향	학선	1152	도	65	65	65	0		국(농림축산~ 품부)

			토지 :	· 소재지		지적	Ţ	도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280	진안	동향	학선	1153	구	1,225	4	4	0		국(농림축산식 품부)
281	진안	동향	학선	1158	구	1,145	1,139	1,132	감)7		국(농림축산식 품부)
282	진안	동향	학선	1161	도	351	42	0	감)42		국(농림축산스 품부)
283	진안	동향	학선	1162	구	388	28	0	감)28		국(농림축산식 품부)
284	진안	동향	학선	1167	구	5	5	5	0		국(농림축산식 품부)
285	진안	동향	학선	1168	구	90	34	0	감)34		국(농림축산스 품부)
286	진안	동향	학선	1168-3	목	27	7	0	감)7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ヴ**
287	진안	동향	학선	1169	구	22	22	22	0		국(농림축산스 품부)
288	진안	동향	학선	1176	구	529	529	529	0		국(농림축산스 품부)
289	진안	동향	학선	15-4	임	11	11	11	0	능급리 ***	박**
290	진안	동향	학선	16-1	임	207	207	207	0		진안군
291	진안	동향	학선	17	임	3,967	544	448	감)96	학선리 ***	<i>\</i> ]**
292	진안	동향	학선	33	임	6,099	101	101	0	서울 양천구 신정동 ***	김**
293	진안	동향	학선	33-1	임	44	44	44	0		진안군

연번			토지 4	<b>소재지</b>		지적 면정	3	E로구역 (	m²)	소유자	
선턴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294	진안	동향	학선	33-2	임	105	105	105	0		진안군
295	진안	동향	학선	100-2	임	49,446	240	0	감)240	학선리 ***	н}**
296	진안	동향	학선	100-6	도	479	97	0	감)97	학선리 <b>*</b> **	길**
297	진안	동향	학선	100-9	임	141	141	141	0		진안군

# 3. 지방도 795호선(정천면 모정리)

어피			토지 :	소재지		지적	3	E로구역 (	m²)	소유자	
연번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기정	변경	중감	주 소	성 명
		ŧ	합 계			9,839	9,839	8,826	감)1,013		
1	진안	정천	모정	1363-4	대	715	715	0	감)7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37길 ***	⊡**
2	진안	정천	모정	산189-19	灹	7,935	7,935	7,807	감)128		전라북도
3	진안	정천	모정	산189-30	모	1,189	1,189	1,019	감)170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9호

### 사방지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 전 라 북 도 지 사 2022년 9월 2일

- 1. 지정 사업 종류 : 사방댐
- 2. 사방지 지정 및 변경지정 내역

가.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09호(2022.9.2)

나. 사 업 종 : 사방댐

다. 지정내역

- 사 방 댐: 3개소 / 16필지 / 4,034㎡

라. 변경지정내역

- 사 방 댐 : 4개소 / 8필지 / 1,217 m²

- 3. 사방지 지정 사유 : 2022년 사방사업 시행 및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지정 4. 기 타
  - 가. 본 사방사업지 내에서는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시설물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나. 사방지의 지정 구역도면과 지번별 조서는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시·군 산림업무담당과에 비치되어 항시 열람할 수 있음.

### 2022년 사방지의 지정 사업별 내역

(단위:m²)

구분		소 ス	대 지		필지수	사 방 지	비고
। स	시·군	구·읍·면	동·리	번 지	될게표	지정면적	H T
합 계			3		16	4,034	
	소계		3		16	4,034	
사방댐	남원	이백	과립	산59 (산36-1)	4	1,307	
~1.9 ⊞	진안	동향	학선	산109	5	1,285	
	진안	진안	구룡	산228	7	1,442	

### 2022년 사방지의 지정 조서 내역

(단위:m²)

11 A1 72		소	재 지	1	지	지적	지정면 적	소 유	자
사업종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목	(m')	(m')	주 소	성 명
1종	총 계		3	16		971,023	4,034		
	합계			16		971,023	4,034		
	소계			4		113,712	1,307		
	남원	이백	과립	산111	구	17,851	496		(국)건설부
				산36	임	40,324	220	남원시 동록굴길 17	이미양외2인
				산36-1	임	48,892	529	광주시 동구 지산동 414-10	김형선외1인
				산58	임	6,645	62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5, 105/602	정유숙
	소계			5		385,268	1,285		
	진안	동향	학선	산107	임	67,736	222	서울 마포구 함정도 394-4 합정맨숀 다동 202호	정근창
				1053	천	2,532	29		(국)건설부
કો ઘો લો				산109	임	5,950	353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1030	한영대
사방댐				산108	임	307,959	344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249-10	심흥선
				산132	천	1,091	337		(국)건설교통부
	소계			7		472,043	1,442		
	진안	진안	구룡	984-4	천	4,335	325		(국)건설부
				215	답	833	83	진안군 진안읍 구룡길 195-1	최삼례
				214	전	407	61	익산시 무왕로25길 12, 701/1202	김성운
				산227	임	307,959	347	진안군 진안읍 전진로 2797-10	박희자
				산228	임	41,454	299	진안군 진안읍 전진로 2797-10	박희자
				산243	천	235	99		(국)건설교통부
				산224-3	임	116,820	228	진안군 진안읍 반월길 228-10	김재홍

# 2022년 사방지의 변경지정 조서 내역

(단위:m²)

11 W =		소	재	지	지	지적	지정면	적(m')	소 유	자
사업종	사군	읍면	동리	번지	목	(m²)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종	총계					461,572	2,646	1,217		
	합계					461,572	2,646	1,217		
	소계			4		31,025	540	-		
	남원	운봉	권포	960-27	임	10,397	14	-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0, 503/101	유승완외1인
				산46-1	임	8,033	367	-	,	김치순
				산47-1	임	7,537	144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59,103/305	최태봉
				산47-2	임	5,058	15	-	남원시 운봉읍 가동길 38-4	강태순
	소계			14		283,805	1,602	1,187		
	진안	용담	송풍	산363	천	496	130	-		(국)건설교통-
				산156-2	임	35,915	16	-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18-16 산호@ 이동 1207호	박태곤외2인
				산158	임	89,256	344	-		(국)산림청
				1848-2	임	325	16	-	진안군 주천면 중리길 43-13	박소우
				1848-1	전	3,958	85	-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894	박소우
				1848	임	1,094	143	-		진안군
				1919	천	1,656	687	-		(국)건설부
				1849-2	전	704	32	-	진안군 용담면 회룡2길 66-10	정봉기
				1811-1	전	5,128	149	-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19, 5층	정대팔
				산156	임	61,788	-	124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18-16산호@ 이동 1207호	박태곤외2인
사방댐				1812	천	182	-	33		진안군
				산156-1	임	68,809	-	230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18-16산호@ 이동 1207호	박태곤외2인
				1811	임	741	-	278		진안군
				1875-214	천	13,753	ı	522		(국)건설부
	소계			5		140,015	159	15		
	장수	번암	국포	산107	임	138,547	53	-	서울 성북구 동산동 4가 327	추병옥
				산120	도	1,091	77	-		(국)건설교통-
				589	답	258	26	-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502	이규홍
				588	답	119	3	-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502	이규홍
	2 20			646	전	0.505	- 0.45	15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32	신암우
	소계	동계	7 m	6	r-l	6,727 89	345 27	15		OF 23 O
	순창	농세	구미	679	답	89	21	_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선동	양석우
				681	답	2,555	76	_	448-1 311동1603호 동계면어치리462	양경호 양경한
				678	답	1,676	60	-	797	양병화
				682	답	1,174	182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선동 448-1 311동1603호 동계면어치리462	양경호 양경한
				615	답	162	-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선동 448-1 311동1603호	양경호
				617	대	1,071	-	3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617	장유임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 - 45호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일 전 라 북 도 지 사

####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으로 이 법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22. 6. 2. 시행)됨에 따라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 1)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6조(도지사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및 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나.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1)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로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안 제20조의2)
  - 2) 제20조의2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 함(안 제20조의2)
- 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서식(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 및 제15호서식) 삭제
- 라. 규칙의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
- 마. 본청 소방본부 및 소방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안 제32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 202 2. 6. 2., 일부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등 :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등과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 2022. 9. 2. ~ 2022. 9. 22.(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감사관 (전화 : 06 3-280-2395, FAX : 063-280-2049)
-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감사관실 감사총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2395)
- 5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를 "전라북도"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라북도의 감사관을 행동강령책임관(총괄)으로 한다. 단, 본청 소방본부 및 소방기관은 소방감찰과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북도(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전라북도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u>전라북도</u>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도지사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삭 제>
<ul> <li>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li> <li>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인 사업자</li> <li>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li> </ul>	

爿

도

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7.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 우
- 8.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 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 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 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도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지사에 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片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 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⑦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 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 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 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도지사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도지사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행동강 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 약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 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

<삭 제>

<u><삭 제></u>

爿

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 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 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도지사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 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도지사는 자신이 소속 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도지사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 · 감독 ·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

<삭 제>

<삭 제>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 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 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 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 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 • 단체, 후원자 등이 비 <u>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u>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 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 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 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 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 용물을 사적 사용한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 용 포함한다)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1. • 2. (생 략)

<삭 제>

<u><삭 제></u>

1. • 2. (현행과 같음)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부당하게 <u>전가</u>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u> 기관 또는 산 <u>하기관에</u>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 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20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u>공무원 자</u> 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 ·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전가(轉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공무원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
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
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u>공직유관단체</u>
5 <u>제4호 각</u>

목의 ----- 단체----

<u><삭 제></u>

户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 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전라북도 감사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고, 본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을 관할하도록 한다.

②・③ (생 략)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전라북도의 감사 관을 행동강령책임관(총괄)으로 한다. 단, 본청 소 방본부 및 소방기관은 소방감찰과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이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 3. 작성자

O 감사관실 행정 6급 채민석(063-280-2395)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46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전 라 북 도 지 사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테마체험관 입장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조문 수정, 어린이날에 어린이의 무료 입장과 전라북도 자원 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테마체험관 입장료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영상관 구분 용어(4D) 삭제(제4조)
- 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조항 삭제(제15조, 제16조, 제19 조, 제21조)
- 다. 테마체험관 입장료 감면 대상 확대 및 비율에 따른 구분(제25조)
  - 입장료 면제 대상에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추가
  - 입장료의 감면 비율에 따라 전액 면제, 50퍼센트 감경, 20퍼센트 감경 및 그 밖의 일부 감경으로 구분
- 라. 테마체험관 입장 제한 대상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제26조)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신이상" 용어 삭제
  - 위험물, 악취 및 혐오감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규정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
- 바. 개정된 용어 및 입장료 관련 개정사항 반영(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정된 내용과 관련된 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기관 협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법무행정과, 인권담당관, 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22. 9. 2. ~ 9. 22.(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신재생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신재생에 너지과(전화: 063-280-4720, 팩스: 063-280-378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 담당자(전화: 063-280-472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명칭 :"을 "명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치 :"를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능 :"을 "기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4D영상관"을 "영상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제5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하여"를 "관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밖에 산업단지"를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중 "임대(이하 "분양"이라 한다)"를 "임대"로, "건축물(이하 "용지"라 한다)"을 "건축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용지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에"를 "도지사는 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통합하여"를 "통합하여 계약서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2항"

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기간중"을 "납입 후 반환 시까지 기간의"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의 조성사업 완료전까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용지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3조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3월~10월 :"을 "3월~10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월 :"을 "2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입장료의 감면) 테마체험관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영상 관 관람료는 감면대상 및 대체 요금 입장에서 제외한다.

- 1. 입장료 전액 면제
  - 가.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바.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 사.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 아. 명예도민증 소지자
  - 2.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부안군 거주자
  - 3. 입장료 20퍼센트 감경: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 4. 그 밖의 일부 감경: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대체 요금 입장

片

가.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나. 입장료에 상당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자(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제26조제1호 중 "정신이상 및 술에"를 "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험물이나"를 "흉기,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의 체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테마체험관내에 다음과 같이"를 "테마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은"을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위탁해지시"를 "위탁해지 시"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민·형사상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은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37조 전단 중 "단지"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단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교육법」제3조"를 "「고등교육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다른 법령의 적용)"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단지의 분양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4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 9. 30, 2019. 2. 1, 2022. ?. ?.> 테마체험관 입장료(제24조 관련)

(단위: 원)

7 н	입 장 료		ਸੀ ਹ
구 분	개인	단체(20인 이상)	비 고
성 인	2,000	1,600	
청소년・군인	1,500	1,200	
어린이	1,000	800	
영상관	2,000		

#### ※ 기 준

- 성 인: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은 경노 대상임

- 청 소 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

- 군 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대체복무요원을 포함

- 어 린 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초등학생

- 단체입장: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 면제 및 할인 대상

구 분	대 상	비고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국가유공증 소지시) 및 그 유족, 직계가족	
	· 장애인(장애인 복지키드 소지시)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면 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자(3개월 유효)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확인가능시)	
	· 어린이날 어린이 대상	
	· 명예도민증 소지자	
*l Al	·부안군 거주자 50%(확인가능시)	
할 인	·단체(20인 이상) 2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 기존 중증(1~3급)의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등을 소지한 사람도 포함됨
- ※ 영상관 관람료는 면제 및 할인 제외

#### ○ 대체 요금 입장 관련

구 분	내 용	비고
전북투어패스	·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입장 가능	
자원봉사 마일리지	· 입장료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입장 가능	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 영상관 관람료는 전북투어패스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불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선도를 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 고 분양 및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필요한
제2조(명칭 등) 이 조례에 <u>의하여</u> 관리·운영하는 시 설의 명칭·위치·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명칭 등) <u>따라</u>
1. <u>명칭 :</u>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1. 명칭:
2. <u>위치 :</u>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2. <u>위치:</u>
3. <u>기능 :</u> 연구, 실증·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및 신재생에 너지에 특화된 전시·홍보 등	3. <u>기능:</u>
제4조 <u>(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u> 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 <u>(정의)</u> <u>뜻은</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관람료"란 <u>4D영상관</u> 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 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u>영상관</u>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된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제5조(설치) 단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u>소속하에</u>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제6조(기능) <u>위원회에서</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6조(기능) <u>위원회</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단지의 분양 및 관리에 <u>관련하여</u> 도지사 가 부의하는 사항	5 관하여

제7조(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당연 직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중에서 4명 이내, 위촉직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중에서 7명 이내로 한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u>밖에 산업단지</u> 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및 의결) ①・② (생 략)	제8조(회의 및 의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분양 및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u>임대(이하</u> "분양"이라 한다)할 용지 및 <u>건축물(이하 "용지"</u> 라 한다)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분양 및 임대) <u></u> <u>연대</u> <u>건축물</u> 
제10조(입주자격)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지의 조성목 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격) 
1.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u>의한</u>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한 자	1 <u>따른</u>
2.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u>의한</u> 인·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2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생 략)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지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 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임대료는 분양가격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② <u>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u> 따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이에</u>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u>도</u> 지사는 <u>이에</u>
제12조(분양절차) ① (생 략)	제12조(분양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u>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u>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제13조(분양계약) 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계약) ① <u>제12조제2항에 따라</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u>통</u> <u>통</u> <u>합하여 계약서를</u>
제14조(계약해지) ① 도지사는 <u>제13조제1항의 규정에</u>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① <u>제13조제1항에 따라</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u>아니하며</u> ,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3조제2항 않으며 납입 후 반환 시까지 기간의
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용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의 조성사업 완료전까지</u>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 ①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분양대금은 단지의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 <u>&lt;삭 제&gt;</u>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분양대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3조제1

항의	규	정에	의한	분양	계약	시	용지의	단가이
차이?	7}-	있을	때					

-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분양대금에 정산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도 <삭 제> 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8조(분양용지의 환수)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 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의 환수를 유 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1.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 3. (생략)

- 제19조(소유권이전) ① 도지사는 단지의 조성사업이 │ 제19조(소유권이전) ① 도지사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 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② (생 략)

- ③ 도지사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 에 관한 사항을 <u>제13조 규정에 의한</u> 분양계약 체 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 기 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도지사는 단지의 조성사 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 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 라도 입주자가 용지의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爿

제18조(분양용지의	환수)		- <u>제13조제1항에</u>
따라			
		<u></u>	
1			
		않은	
0 0 (-1-2)	<b>a</b> )		
2.・3. (현행과 같	·음)		

- 용지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 ------
- 제20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

③	
	제13조에 따른
	정한다.

④ ----- <u>제2항에 따른</u> -----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삭 제>

爿

도지	사는 지역	역산업	발전에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용지를	사용히	<b>나게</b> 할	수	있다.		

제23조(이용 및 매표 시간) ① 테마체험관의 이용시간 제23조(이용 및 매표 시간) ①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 2. 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 ② (생략)
- ③ 도지사는 운영상 이용자의 편의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용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5조(입장료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면제한다.
  -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3의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4.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 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 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 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② 도지사는 미취학어린이, 65세 이상자, 명예도민 중 소지자 등은 무료로 하고, 부안군 거주자는 5 0%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에 대하여 50%할인 한다.

1. <u>3월~10월:</u>
2 2월: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에도</u>

- 제25조(입장료의 감면) 테마체험관의 입장료는 다음 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영상관 관람료는 감면대 상 및 대체 요금 입장에서 제외한다.
  - <u>1. 입장료 전액 면제</u>
    -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
    - <u>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u> 하 "장애인"이라 한다)
    -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 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바.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 사.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 <u>아. 명예도민증 소지자</u>
  - 2.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부안군 거주자
  - 3. 입장료 20퍼센트 감경: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 4. 그 밖의 일부 감경: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u>5. 대체 요금 입장</u>
    - 가.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 <u>나. 입장료에 상당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u> <u>자(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u>

제2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입장의 제한)
1. <u>정신이상 및 술에</u> 취한 사람	1. <u>술에</u>
2. <u>위험물이나</u>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u>흉기,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의 처</u> <u>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7조(행위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테마체험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u> 된다.	제27조(행위의 제한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u>테마체험관내에 다음과 같이</u> 편의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편의시설)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위탁운영) ① 단지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위탁운영)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u>의한</u> 대학·산업대학·전문대 학 및 기술대학	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ol> <li>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u>의하여</u> 설립된 비영리법인</li> </ol>	4 <u>따라</u>
② 도지사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② 제1항에 따라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u>위탁기간은</u>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③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라
제3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범인이나	제3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u>하여서는</u>	해서는 <u>안</u> -
<u>아니</u> 된다. 다만, 테마체험관을 재위탁할 시는 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위탁의 해지) ① (생 략)	제33조(위탁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도의	②
재산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	위탁해지
해지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제34조(민ㆍ형사상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수	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
탁기관이 변상책임을 진다.	<u>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u>
② 수탁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	
<u>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u>	
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기관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	
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	
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u>과 관련된 비용을 도지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u> <u>다.</u>	
제37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단지 운영에 필요	제37조(자체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
제3/조(사세군형규정) 구덕기관은 <u>단시</u> 군정에 필요 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세3/조(사세군형파성) <u>이 소데에서 성</u> 사항 이외에 단지
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u>「공유재산</u> 및 물품 관리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고등교육법」제3조</u> 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 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u>「고등교육법」 제3조</u>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단지의 분양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u>&lt;신 설&gt;</u>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0조(규칙) 필요한

#### 붙임 1

#### 일부개정 조례안(전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선도를 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기능은 다음 과 같다.

- 1. 명칭: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 2.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개정 2014. 10. 22.>
- 3. 기능: 연구, 실증·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전시·홍보 등

제3조(구성)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실증ㆍ성능평가를 위한 실증연구단지
-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산업연구단지
- 3.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테마체험관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조성원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에서 규정된 용지비, 조성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2. "공동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된 단지안의 도로, 폐기물처리장, 체육시설, 복지후생시설 등 공동시설 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말한다.
- 3."입장료"란 테마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다
- 4. "관람료"란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제2장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단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단지에 입주할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관한 사항
- 2. 단지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 3.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단지의 분양 및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중에서 4명 이내, 위촉직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중에서 7명 이내로 한다.
  - 1. 전라북도 분양 및 관리 관련 실・국장
  - 2. 부안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과장
  - 3. 단지의 관리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 4. 전라북도의회 의원
  - 5. 도 및 부안군 상공회의소 상공인 등
  - 6.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전라북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단지의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제3장 실증연구단지 및 산업연구단지의 분양 등

- 제9조(분양 및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은 공공시설용 지를 제외한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10조(입주자격)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할 수 있다.
  - 1.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한 자
  - 2.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도지사는 용지의 분양가격을 용지의 조성원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 2.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 ②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임대료는 분양가격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분양계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14조(계약해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납입 후 반환 시까지 기간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용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제16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 ① 삭제

② 삭제

제17조(양도와 대여 금지) <삭제 2015. 10. 30>

- 제18조(분양용지의 환수)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의 환수를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1.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9조(소유권이전) ① 도지사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용지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 제20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삭제

제4장 테마체험관의 운영 등

- 제22조(개관 및 휴관일) 테마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며,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한다.
  - 1. 1. 1일, 명절(설·추석) 당일
  - 2. 월요일
  -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23조(이용 및 매표 시간) ① 테마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 2.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도지사는 운영상 이용자의 편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4조(입장료) ① 테마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 제25조(입장료의 감면) 테마체험관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영상 관 관람료는 감면대상 및 대체 요금 입장에서 제외한다.
- 1. 입장료 전액 면제
- 가.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개정 201 9. 8. 9.>
-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 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바.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 사.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 아. 명예도민증 소지자
- 2.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부안군 거주자
- 3. 입장료 20퍼센트 감경: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 4. 그 밖의 일부 감경: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대체 요금 입장
- 가.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 나. 입장료에 상당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자(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 제2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술에 취한 사람
  - 2. 흉기,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의 체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3.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 가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7조(행위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테마체험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흡연 ·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 3.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 4. 고성 ·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과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9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테마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편의점 및 기념품점
  -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5장 위탁운영

- 제30조(위탁운영) ① 단지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3. 전라북도 출연기관
  -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기간
  -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제31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단지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테마체험관을 재위탁할 시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지원금과 입장료 등 수입금을 단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제32조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도의 재산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34조(민·형사상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은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 제3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보고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 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보칙

- 제38조(산업기술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 ① 도지사는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2.>
  - ②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인 사업시행자
-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 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9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 용한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1. 11.>

제4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발생 예상

#### 3. 작성자

○ 신재생에너지과 지방시설주사보 이승원(063-280-4720)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22-47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 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2년 9월 2일 전 라 북 도 지 사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정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벤처·창업 투자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금에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안 제3조제3항)
-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안 제4조)
- (현행) 2022년 12월까지 → (개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 다. 계정별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 용도 구분 등(안 제5조~안 제11조)
  - 1) 계정별 기금의 조성 재원 구분(안 제5조)
  - 2) 계정별 운용 자금, 사용 용도, 지원 대상 구분(안 제8조~안 제11조)
- 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 개정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융자계정) 붙임

다. 협 의 :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등

라. 입법예고 : 2022. 9. 2. ~ 2022. 9. 22.(20일간)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기업지원과(전화 : 063-280-3228, FAX : 063-280-3229)
-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기업지원과 담당자(063-280-32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을 "제1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 「중소기 업진흥에 관한 법률 \_ 제62조의15와 제62조의16의 규정"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중소 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2의 규정"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 제28조의2"로, "설립한자"를 "설립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임대 사업자"를 "임대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에 따라"를 "따라"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조제6호의 규정"을 "제2조제6호"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 조의2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9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와"를 "전라북도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을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융자상환금 등"을 "융자금 회수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도지사는 제1항제1호"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한다.

-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전라북도 및 시 · 군의 출연금
- 2. 투자 회수금
-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기금운영상"을 "기금의 운용상"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을 "(중소 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으로,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출연금 및 융자금은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을 "중소벤처기업 창업"으로, "예탁"을 "출연"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으로,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업

무담당"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용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특화산업지원"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안정지원"을 "경영안정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대출자금"을 "융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금관리"를 "기금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1. 벤처 · 창업 투자 지원자금
- 2. 그 밖에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
- ⑤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⑥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이차보전"을 "이자차액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차입금"을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2.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3. 투자계정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사업의 지원

제10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 2.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 4. 시장정비사업자
- 5. 체인사업자(직영점·가맹점)
- 6.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조합
- 2. 모태조합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 중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을 "융자계정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을 "「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을 "「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 제2조"로,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항 제2호 중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제36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로, "설립사업"을 "설립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그 밖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원사업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2항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로, "시설현대화"를 "시설 현대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19조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로, "표준화 및 현대화,"를 "표준화, 현대화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 자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를 "융자계정 중 지역산업 육성·지원

자금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라"로, "이를 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경영안정지원"을 "경영안정 지원"으로, "사업을 위하여 이를"을 "사업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제조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객자동차 운송업체"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사업을 위하여 이를"을 "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밖의"를 "밖에 도지사가"로, "위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금 중 창업・벤처"를 "투자계정 중 벤처・창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으로, "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투자계정 중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 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4항,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상기업 등에게"를 "선정 기업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5항까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기관"을 "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으로, "대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종전의 제10조의2) 중 "시행"을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융자계획의 공고 등)"을 "(융자 지원계획의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년"을 "제8조제3항에 따른 자금별 지원에 관하여 매년"으로, "융자계획"을 "융자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기금"을 "제8조제3항"으로, "사람은"을 "자는"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을 "위탁하는 기관에 융자를 신청"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을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2.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경제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 3.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5항 본문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한번"을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기금을"을 "자금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을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의"를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기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과 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보조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전문기관의 협조)"를 "(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을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으로, "현지실사"를 "현지조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제1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u>뜻은</u>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u>제2조의 규</u> <u>정</u>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u>제2조</u>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와 제62조의16의 규정 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u>"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u> <u>「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u> 법률」 제6조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란 <u>「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u> 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3 <u>「중소기업진홍에</u> <u>관한 법률」 제3조</u>
4. "창업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 하여 고시한 계획을 말한다.	<u>&lt;</u> 삭 제>
5.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아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자를 말한다.	5. <u>"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란 「산업집적활성</u> <u>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u> 설립한 자
6.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u>임대사업자</u> "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2에 <u>규정에 따라</u>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 결한 <u>사람을</u> 말한다.	6 <u>임대사업을 하는 자</u> <u>따라</u> <u>자를</u>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 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u>제2조제6호</u> 의 규정에 따라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u>사람을</u>	8 <u>제2</u> 조제6호- <u>자를</u>

말한다.

- 9.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8 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
- 1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 다)"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 조의2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및 「재 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u><신 설></u>

- 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 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세입 · 세출예산외 처리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까지로 하 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조성한다.
  - 도와 시・군의 출연금
  - <u>2. 기금운용 수익금</u>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9. ----- \_ 「유통산업발전법」 제18

-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 한다.
-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

1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u>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u>조 ---------- 따라 ------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 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중소기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 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 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

1. 전라북도 및 -----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 <u>제63조에 따른 중</u>

5. (생략)

도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소벤처기업창업
5 등	4.     8/10 최 1 0.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u>&lt;신 설&gt;</u>	<ul> <li>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li> <li>1.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li> <li>2. 투자 회수금</li> <li>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li>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li> </ul>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 1호
제5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u>기금운영상</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u>제6조</u> (자금의 차입) <u>기금의 운용상</u> 
제6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 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 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② 기금을 <u>중소기업창업</u>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u>「지방자치단</u> 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창업 출연 <u>「공공자금관</u> 리기금법」을 적용한다.
<u>제7조</u> (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생 략)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일자리경제본부 장을 <u>기금운용관으로,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u> 으로 업무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u>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u> 분임운용관으로 하며, 업무 담당
③ <u>기금</u> 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 다.	③ 융자계정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지역특화산업지원</u> 자금	3. <u>지역산업 육성ㆍ지원</u> 
4. 중소기업 <u>경영안정지원</u> 자금	4 <u>경영안정 지원</u>

5. (현행과 같음)

6. 벤처·창업	투자 지원자금
----------	---------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사업별 자금을 상호 전 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 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 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 ⑥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 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융자를 취급 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 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신 설></u>

- 할 수 있다.
- 1. (생 략)
-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u>이차보전</u>
- 3. <u>차입금</u>에 대한 원리금 상환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

<삭 제>

- ④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 용한다.
- 1. 벤처・창업 투자 지원자금
- 2. 그 밖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 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
- ⑤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 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u>(7)</u>		 	<u> ず</u> く	<u> </u>				 
-	 	 						 
-	 	 			<u>기금</u>	의 관	리	 
-	 	 						 
-	 	 						 
-	 							

<삭 제>

-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u>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u>
  - 1. (현행과 같음)
  - 2. ----- <u>이자차액 보전</u>
  - 3. <u>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u>--
  - <u><삭 제></u>

 $\frac{\delta}{\delta}$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  $\cdot$  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 5.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6. 그 <u>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u>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u><신 설></u>

<신 설>

제9조(기금의 지원대상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을 받는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창업자
-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
- 4.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5. 융자계정-----

6. -- <u>밖에</u> -----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 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 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2.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3. 투자계정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사 업의 지원

제10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 전라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 2.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 4. 시장정비사업자
- 5. 체인사업자(직영점 · 가맹점)
- 6.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조합
- <u>2. 모태조합</u>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 3항 및 제8조제4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 대 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u><삭 제></u>

2002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가진홍조합의 조합원	
<u> </u>	및
<u>경쟁력강화지원자금</u>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시	용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	[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	<u>.</u>
사업전환 등의 <u>구조 고도화 지원사업</u>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2부터 <u>제36조까지의 규정</u> 에 따른 대·	중
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	분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
<u>28조의2의 규정</u> 에 따라 시장·군수의 설립	

- 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u>설립사업</u>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
- 6. (생략)

의 임대사업

7. 그 밖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구조고도화지 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u><신 설></u>

- ② <u>기금</u> 중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2.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체인 점포의 <u>시설현대화</u>,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 동물류사업
- 3. 「유통산업발전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점포 시설의 <u>표준화 및 현대화</u>, 조합원의 판매촉진

<u>제11조(기금의 사용 등) ① 용자계정 중 중소기업 창</u> 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u>지원사업</u>
2 <u>제36조까지</u>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창업기 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u> 28조의2 설립 지원사업
5.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u> 38조의2
6. (현행과 같음)
7. <u>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u>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u>융자계정</u>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 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2. <u>「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u> <u>시설 현대화</u>
3.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 <u>표준화, 현대화 및</u> -----

片

을 위한 공동사업

- ③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 자금은 지방중소기 업육성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 고 확정한 사업에 <u>이를 사용</u>할 수 있다.
- ④ <u>기금</u> 중 중소기업 <u>경영안정지원</u> 자금은 다음 각 호의 <u>사업을 위하여 이를</u> 사용할 수 있다.
- 1.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2. <u>여객자동차 운송업체</u>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 금
- 3.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⑤ <u>기금</u> 중 벤처기업의 육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u>사업을 위하여 이를</u> 사용할 수 있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u>규정</u>에 따른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 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2. 그 <u>밖의</u> 벤처기업 육성을 <u>위한</u> 지원사업
- ⑥ 기금 중 창업·벤처 투자 지원자금은 <u>「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u> 각 호에 따른 <u>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u>에 대한 출자에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 ① 도지사는 <u>제1항, 제4항, 제5항</u>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u>수상기업 등에게</u>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⑧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③ 용자계정 중 지역산업 육성·지원 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라 
④ 용자계정 <u>경영안정 지원</u> <u>사업에</u>
1. 중소기업
2.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u>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⑤ <u>용자계정</u> <u>사</u> 업에
1.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u> - 
2 밖에 도지사가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ul><li>⑥ 투자계정 중 벤처・창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li><li>-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li></ul>
⑦ 투자계정 중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u>⑧ 제4항 선정 기업 등에</u>
 ⑨ <u>제5항까지</u>
<u>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u> <u>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u>

다.	 <u>⑩</u>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0조의2(특별자금지원)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신행할 수 있다.	<u>제11조의2</u> (특별자금지원)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u>매년</u>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기금 <u>융자계획</u> 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지원계획의 공고 등) 제8조제3항 따른 자금별 지원에 관하여 매년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13조(</u> 융자조건 등) ① <u>제8조제3항</u> 
제13조(융자신청) ① <u>기급</u> 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u>사람</u> 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u>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u> 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제8조제3항 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u>도지사는 제11조에</u> <u>의한 융자신청서를</u>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u>도지사 또는 도지</u> 가 위탁하는 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15조</u>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u>제16조</u>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한</u> 1 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u>포</u> 함하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 사람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경제단체의 장또는 임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도지사가 위촉한다.	<ul> <li>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사가 위촉한다.</li> <li>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li> <li>2.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경제단체장 또는 임직원</li> </ul>

⑤ <u>위원회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번</u>만 연 ⑤ <u>위원------ 한 차례</u>-

3.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u>서 삭제&gt; &lt;후단 삭제&gt;</u>
⑥ (현행과 같음)
<u>제17조</u>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자금을</u>

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 무를 위탁 받은 기관과 기금지원사업 추진을 위하 여 출연·보조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

②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보조받은 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추진상황 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 일 이내에 <u>기금의</u>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u>등 전문기관</u>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u>현</u> <u>지실사</u>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u>제</u>
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계획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기금의
② 제1항에 따른 기급운용계획안과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 무를 위탁 받은 기관과 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 하여 출연 · 보조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전문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홍공단 제19조(전문기관 등의 협조) ----- 기금관리업무를 <u>위탁 받은 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 현</u> <u>지조사</u> ------

#### 붙임

#### 비용추계서(융자계정)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투자계정)

##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유자계정)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2023년~2025년)에 따른 재정수 반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 개정 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16,000,000	16,500,000	17,000,000	49,500,000
지출	예치금	204,402,603	207,773,937	215,168,103	627,344,643
기필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68,400	4,006,700	-	9,675,100
	소 계	226,071,003	228,280,637	232,168,103	686,519,743
	전입금	18,190,212	18,245,766	18,268,018	54,703,996
ار کر ا	예치금 회수	204,120,839	206,212,542	210,044,712	620,378,093
수입	이자수입	3,759,952	3,822,329	3,855,373	11,437,654
	소 계	226,071,003	228,280,637	232,168,103	686,519,743

※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추계이며, 중기재정계획 내용을 반영함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합 계
	국 비	-	-	-	-
	일반회계	18,190,212	18,245,766	18,268,018	54,703,996
도비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시군비	-	-	-	-
민 간		-	-	-	-
기 타		-	-	_	-
	합 계	_	-	-	_

5. 부대의견 : 해당없음6. 협의사항 : 예산과 협의

7. 작 성 자 :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황인애(063-280-3228)

##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2022년 예 산	이 후 연간예산 (3개년)	비고
합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b>(용자계정)</b> 지원	226,102,208	686,519,743	
비용자성 사업비	·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책자금 <b>이차보전 지원</b>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경영안정자금 - 벤처기업 육성자금	15,500,000	49,500,000	
예치금	· 기금 운용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현재 시점 예상액)	203,639,108	627,344,643	
예수금 원리금 상환	· <b>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b> - 융자기간 : 2004년~2009년 - 융자원금 : 120,400,000 - 이 율 : 융자년도 이율 적용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상환	6,963,100	9,675,100	

※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경우** 의안의 내용이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미첨부함.

##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투자계정)

####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 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 용에 대한 추계서를 미첨부함.

#### 3.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황인애(063-280-3228)

#### 참고

#### 관계 법령

-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 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 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있다.
  - 1. 벤처투자조합
  - 2. 모태조합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22-48호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전 라 북 도 지 사

#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이관되어 규정됨에 따라, 법령을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며, 기관명 현행화 등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의 설치 관련 인용 조문 변경(안 제17조)
- 나. 일부표현 정비(안 제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감사관, 예산과, 인권담당관

라. 입법예고 : 2022. 9. 2.~ 2022. 9. 22.(20일간)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9.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기업지원과 (전화 : 063-280-4732, FAX : 063-280-3229)
-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4732)
- 5.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 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 호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 내"를 "도내"로, "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을 "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17조 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7조 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지방중소기업"을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제3항제1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제21조 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

# 붙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상) ①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기업인" (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라북 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선정한다.	제4조(대상) ①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기업인(이 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기타</u>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근로자	3. 그 밖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u>제4조 제1항</u> 에 따른 우수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예산의 <u>범위 안</u>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u>제4조제1항</u> <u>범위</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기타</u>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 정적 지원	7. <u>그</u> 밖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 킨다.	제6조(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4. 그 밖에
제7조(적용배제)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우를 중단한다.	제7조(적용배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 우	4. <u>그 밖에</u>
제8조(대상 등) ①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은 전 라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 화에 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자로 하며 시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8조(대상 등) ① <u>도</u> <u>내</u> <u>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평가)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도지사가 개별공적심사조서를 작 성하여 <u>제17조 제1항</u> 의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 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한다.	제10조(평가)
제12조(지원)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u>범</u> <u>위 안</u> 에서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u>범위</u>  
제13조(육성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판매력 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 라 한다)을 선정·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육성 등) ① <u>제17조제1항</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9조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 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u>지방중소기업</u> 지원에 관하여 지원기관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1. <u>지역중소기업</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u>지방중소기업</u> 에 공통되는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 달에 관한 사항	4. <u>지역중소기업</u>
5. <u>기타 지방중소기업</u>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u>그 밖에 지역중소기업</u>
제18조(구성) ①・② (생 략)	제1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도 업무담당 실·국·본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기관 대표	1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중소기업진흥공단</u> 전북지역본부	라. 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u>차례</u> 연임할 수 있다.	④ <u>차례만</u>
제20조(회의) ①・② (생 략)	제20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u>5일전</u>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u>기타</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u>5일 전</u> 그 밖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 <u>제21조 제1항</u>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 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u>제21조제1항</u>
제2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u>범위 안</u>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u>필요한</u>

####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미첨부함.
  - 상위법 개정 반영 및 기관명 현행화 등 용어 정비로 비용 미발생

#### 3.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공업8급 박진탁(063-280-4732)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도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54조의29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이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 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2.1.25.]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2-1368호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격포낚시어선구조협회)

「민법」제32조 및「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9월 2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허가번호 : 제2022-31호

2. 법 인 명: 사단법인 격포낚시어선구조협회

3.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22, 2층

4. 대 표 자 : 강 용 철

5. 설립목적 : 바다낚시 및 해양관광발전 활성화에 따른 경제발전에 기여

6. 허가구분 : 신규

7. 주된사업

가. 수상안전에 필요한 자율 구조활동

- 나. 무인도 및 해양투기물 수거작업
- 다. 회원의 권익과 각종 정보수집 및 교육
- 라. 해양오염에 관한 지도 및 계몽활동
- 마.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8. 26.(금) 15:3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 업무	<ul> <li>○ 국가 공모사업 대용 철저</li> <li>최근 연이은 대형 국가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런 성취를 계기로 자신감을 가지고 더 새롭고 담대하게 도전하기 바람.</li> <li>*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통과(8.24), 이산 국립호남권청소년다딤센터 건립 선정(8.12),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8.4)</li> <li>해수부 공모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계획 발표(8.16.)</li> <li>- 공모 대상 지자체 : 전북(고창), 전남(신안), 충남(서천)</li> <li>- 해양수산부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남해안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출범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입지 선정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 바람.</li> <li>- 또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li>(주관: 해양항만과, 국제협력과 / 협조:)</li> <li>○ 시도지사협의회 제안안건 발굴·건의 등 적극 활용</li> </ul>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8.19.) - 회장 : 경북도지사, 부회장 : 전북도지사, 인천시장 / 임기 : ~ '23.6.30.  - 중요한 전북 아젠다(현안, 제도개선 등)를 전국적 이슈화 하고, 시·도 공통 아젠다를 발굴해서 아이디어 제안 및 정부에 건의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창구로 시도지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주관 : 전 실·국 / 협조 : 정책기획관)
	당면·현안 업무	<ul> <li>○ '23년 신규시책·국책사업 등 발굴 철저</li> <li>- '23년 신규시책과 국책사업은 치밀하게 준비하여 도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특색 있고 규모 있는 좋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시 유관 민간사업자의 의견 및 제안 아이디어도 청취하기 바람.</li></ul>
		는 대외협력 업무추진 시 서울본부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공조하기 바람 또한, 정무특보, 정책보좌관과도 상의 및 자문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주관: 전 실·국 / 협조: 전라북도서울본부)

전주시 고시 제2022-162호

#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주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1980-81(1980. 5. 2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주대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전 주 시 장 2022년 9월 2일

- □ 전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
-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н	도면 · 표시	시석명	시설의	위치		면 적 (m²)	최 종	비고	
구분	변호	시설명	세 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기정	2	학교	전주 대학교	완산구 효자동3가 1203번지 일원	591,087.3	-	591,087.3	전북81 (1980. 5. 28.)	

2.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지 62,596.0 - 62,596.0 10.6 채육장 지 73,450.0 - 73,450.0 12.4 도로 및 주차장	ul			
구 분	당초	증/감	변경	(%)	n) 77
합 계	591,087.3	_	591,087.3	100.0	
교사시설지	306,392.3	_	306,392.3	51.8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기타시설
운동시설지	62,596.0	_	62,596.0	10.6	체육장
교통시설지	73,450.0	_	73,450.0	12.4	도로 및 주차장
기타시설지	37,379.0	_	37,379.0	6.3	유보지/조경휴게지/실습장
녹 지	111,270.0	_	111,270.0	18.8	

## 3. 금회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투	부지면젹(m	<sup>2</sup> )	₹	ป축면적(m	1²)	건축	( m² )	비고	
	丁 亡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미끄
	합 계	591,087.3	-	591,087.3	76,629.95	감)59.00	76,570.95	208,859.65	증)166.00	209,025.65	
	계	306,392.3	-	306,392.3	75,667.76	감)59.00	75,608.76	207,664.58	증)166.00	207,830.58	
	교수연구동(B동)	=	증)3,547.9	3,547.9	-	증)897.25	897.25	-	증)2,368.54	2,368.54	
교사	예술관(예체능)	11,073.0	-	11,073.0	3,268.65	증)25.00	3,293.65	10,198.00	증)100	10,298.00	
시설	유학생기숙사	3,684.9	감)3,684.9	-	897.25	감)897.25	-	2,368.54	감)2,368.54	-	
	혁신공유대학 (실감미디어)	1,630.0	증)137.0	1,767.0	384.00	감)84.00	300.00	384.00	중66.00	450.00	

### 4.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벍	늇		부지면적(m²)			건축규모(m²)						
구	· 분	<u> </u>	호	세부시설명	Τ,	시면적(	m )		건축면적	1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ą	총 계		591,087.3	-	591,087.3	76,629.95	감)59.00	76,570.95	208,859.65	증)166.00	209,025.65	
		1-1	1-1	대학본관 (구 중앙도서관)	23,573.0	-	23,573.0	4,593.70	-	4,593.70	18,116.80	-	18,116.80	
		1-2	1-2	진리관 (인문/사범)	10,689.0	-	10,689.0	2,189.58	_	2,189.58	8,633.00	증)47.00	8,680.00	
		1-3	1-3	자유관(경영)	13,874.0	-	13,874.0	1,415.92	-	1,415.92	5,761.00	증)30.56	5,791.56	
		1-4	1-4	교수연구동(A동)	9,148.0		9,148.0	803.60	-	803.60	6,904.17	-	6,904.17	
		2-8	1-4	교수연구동(B동)	-	증)3,547.9	3,547.9	-	<del>증</del> 897.25	897.25	_	<del>3</del> 2,388.54	2,368.54	
		1-5	1-6	공학1관	12,690.0	-	12,690.0	2,597.40	_	2,597.40	13,601.70	-	13,601.70	
		1-6	1-7	공학2관	4,444.0		4,444.0	2,179.48	-	2,179.48	6,985.13	-	6,985.13	
		1-7	1-8	공과대학 실습동	1,244.0	-	1,244.0	1,440.00	_	1,440.00	1,440.00	-	1,440.00	
		1-8	1-9	평화관 (사회과학)	12,041.0	_	12,041.0	1,463.48	_	1,463.48	6,350.19	_	6,350.19	
사	교육	1-9	1-10	예술관 (예체능)	11,073.0	_	11,073.0	3,268.65	증)25.00	3,293.65	10,198.00	증)100.00	10,298.00	
시 설	기본 시설	1-10	1-11	예술관 별관	6,313.0		6,313.0	2,046.12	-	2,046.12	5,518.82	-	5,518.82	
지	1 2	1-11	1-12	공예관	4,120.0	-	4,120.0	682.40	-	682.40	675.00	-	675.00	
		1-12	1-13	천잠관(이공)	14,267.0	-	14,267.0	2,346.05	-	2,346.05	10,671.90	-	10,671.90	
		1-13	1-14	이공대학 실습동 (A동)	2,326.0	-	2,326.0	394.00	-	394.00	1,182.00	-	1,182.00	
		1-14	1-15	이공대학 실습동 (B동)	180.0	-	180.0	27.00	-	27.00	27.00	-	27.00	
		1-15	1-16	이공대학 실습동 (C동)	120.0	-	120.0	18.00	-	18.00	18.00	-	18.00	
		1-16	1-17	창조관 (구 문화관광대 실습동)	2,342.0	-	2,342.0	878.00	-	878.00	2,284.49	_	2,284.49	
		1-17	1-18	지역혁신관 (문화관광대 강의동)	9,725.0	-	9,725.0	1,159.00	_	1,159.00	6,852.29	_	6,852.29	

도

		번호			부	지면적(	m²)			건축규모(m²)					
구	분	긴	<u>Y</u>	세부시설명	7	시민족(	.111 /		건축면적	1		연면적		則	
		기정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1-18	1-19	EM생활관	3,005.0	-	3,005.0	893.34	-	893.34	2,117.49	-	2,117.49		
		1-19	1-20	대학교회	3,256.0	-	3,256.0	772.70	1	772.70	1,194.38	-	1,194.38		
		1-20	1-21	학생회관	14,751.0	-	14,751.0	2,521.43	-	2,521.43	10,767.00	-	10,767.00		
		1-21	1-22	스타센터	23,275.0	-	23,275.0	16,168.61	-	16,168.61	24,976.01	-	24,976.01		
		1-22	1-23	국제교육관 (스타센터부지 포함)	-	-	-	531.92	-	531.92	1,032.60	_	1,032.60		
			소	계	182,456.0	증)3,547.9	182,456.0	48,390.38	증)922.25	49,312.63	145,384.53	증)2,468.54	147,853.07		
		2-1	2-1	체육관	8,828.0	-	8,828.0	2,589.68	-	2,589.68	2,439.95	-	2,439.95		
		2-2	2-2	순영관 (구 체육관별관)	5,215.0	-	5,215.0	1,507.89	-	1,507.89	2,286.40	-	2,286.40		
		2-3	2-3	스타드림관 (구 유인탁 체육관)	3,256.0	-	3,256.0	572.76	-	572.76	572.76	-	572.76		
		2-4	2-4	믿음관 (구 영상관)	2,929.0	_	2,929.0	562.80	-	562.80	1,267.20	-	1,267.20		
	지원 시설	2-5	2-5	스타홈 (구 학생기숙사B)	6,532.6	-	6,532.6	1,246.26	-	1,246.26	4,482.46	-	4,482.46		
		2-6	2-6	스타빌 (구 제2기숙사 (3동))	16,877.8	-	16,877.8	2,803.00	-	2,803.00	11,502.53	-	11,502.53		
		2-7	2-7	스타타워	14,019.0	-	14,019.0	2,777.24	-	2,777.24	19,078.81	-	19,078.81		
		2-8	1-5	유학생 전용 기숙사	3,684.9	감)3,684.9	I	897.25	감)897.25	ı	2,368.54	김)2,368.54	_		
		2-9	2-8	노천극장	14,340.0	-	14,340.0	221.40	-	221.40	231.48	-	231.48		
		2-10	2-9	희망홀	13,956.0	-	13,956.0	3,322.00	-	3,322.00	2,175.60	-	2,175.60		
			소	계	89,638.3	ZB,684.9	85,953.4	16,500.28	김897.25	15,603.03	46,405.73	감)2,368.54	44,037.19		
		3-1	3-1	EM연구실습동	2,292.0	-	2,292.0	1,092.56	-	1,092.56	1,971.70	-	1,971.70		
	연구	3-2	3-2	음식물발효실	-	-	-	30.00	-	30.00	30.00	-	30.00		
	시설	3-3	3-3	온실	474.0	-	474.0	334.56	-	334.56	334.56	-	334.56		
			소	계	2,766.0	-	2,766.0	1,457.12	-	1,457.12	2,336.26	-	2,336.26		
		4-1	4-1	군사교육관	3,267.0	-	3,267.0	830.58	-	830.58	2,168.73	-	2,168.73		
		4-2	4-2	야외매장	-	-	_	29.23	-	29.23	29.23	-	29.23		
		4-3	4-3	야외매장2	640.0	-	640.0	144.09	-	144.09	144.09	-	144.09	L	
		4-4	4-4	야외매장3	600.0	-	600.0	144.09	-	144.09	144.09	-	144.09	L	
		4-5	4-5	야외매장4	_	-	_	88.20	-	88.20	102.64	-	102.64	1	
	부속 시설:	4-6	4-6	한지산업관 (구 닥무지 사업장)	544.0	-	544.0	379.77	-	379.77	715.83	-	715.83		
	/小三章	4-7	4-7	조경창고	-	-	_	18.00	-	18.00	18.00	-	18.00	L	
		4-8	4-8	벤처창업관 (구 창업보육 센터)	7,786.0	-	7,786.0	2,901.69	-	2,901.69	5,259.31	_	5,259.31		
		4-9	4-9	소셜벤처 실습장	960.0		960.0	280.00	-	280.00	280.00	-	280.00	L	
		4-10	4-10	통학버스지원 시설	338.0	_	338.0	115.21	-	115.21	115.21	_	115.21		

도

보

										건축구	구모(m²)			
구	. 분	번	호	세부시설명	부	지면적(	m²)		건축면적		,	연면적		비
ľ	_	기정	변경	11120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 변경	당초	증/감	변경	ļ '
		4-11	4-11	통학버스 승강장	100.0	-	100.0	65.35	-	65.35	65.35	-	65.35	
		4-12	4-12	공동직장 어린이집	7,170.0	_	7,170.0	1,153.66	_	1,153.66	1,153.66	_	1,153.66	
		4-13	4-13	실감기반 훈련센터	885.0	_	885.0	200.00	-	200.00	300.00	_	300.00	
		4-14	4-14	혁신공유대학 (실감미디어)	1,630.0	증)137.0	1,767.0	384.00	감)84.00	300.00	384.00	증)66.00	450.00	
		4-15	4-15	휴게시설	80.0	-	80.0	60.00	-	60.0	60	-	60.0	
			소	계	24,000.0	증)137.0	24,137.0	6,793.87	감)84.00	6,709.87	10,940.14	증)66.00	11,006.14	
		5-1	5-1	공예관부속동	100.0	-	100.0	38.10	-	38.10	38.10	-	38.10	
		5-2	5-2	평안의 집	1,053.0	-	1,053.0	111.00	-	111.00	111.00	-	111.00	
		5-3	5-3	경비실(정문)	336.0	-	336.0	263.22	-	263.22	95.11	-	95.11	
		5-4	5-4	창고 및 화장실동	4,332.0	-	4,332.0	1,008.83	-	1,008.83	1,120.05	-	1,120.05	
		5-5-1	5-5-1	기자재창고	110.0	-	110.0	86.40	-	86.40	86.40	-	86.40	
		5-5-2	5-5-2	기자재창고	237.0	-	237.0	193.50	-	193.50	193.50	-	193.50	
		5-6	5-6	창고	-	-	-	43.00	-	43.00	43.00	-	43.00	
		5-7	5-7	변전실	1,264.0	-	1,264.0	268.05	-	268.05	396.75	-	396.75	
	기타	5-8	5-8	펌프실 (급수실)	100.0	-	100.0	54.12	-	54.12	54.12	-	54.12	
	시설	5-9	5-9	전기실 (진리관 인근)	-	-	-	100.00	-	100.00	100.00	-	100.00	
		5-10	5-10	전기실 (공학1관 인근)	_	-	-	100.00	-	100.00	100.00	-	100.00	
		5-11	5-11	전기실 (천잠관 인근)	_	_	-	96.39	_	96.39	96.39	_	96.39	
		5-12	5-12	전기실 (예술관 인근)	-	-	-	90.42	-	90.42	90.42	-	90.42	
		5-13	5-13	전기실 (희망홀 인근)	-	-	-	39.69	-	39.69	39.69	-	39.69	
		5-14	5-14	전기실 (체육관 인근)	-	_	-	33.39	-	33.39	33.39	-	33.39	
			소	계	7,532.0	-	7,532.0	2,526.11	-	2,526.11	2,597.92	-	2,597.92	
			계		306,392.3	-	306,392.3	75,667.76	감59.00	75,608.76	207,664.58	증)166.00	207,830.58	
		6-1	6-1	골프연습장	4,790	-	4,790.0	320.92	-	320.92	517.00	-	517.00	
		6-2	6-2	심판휴게실	-	-	-	130.92	-	130.92	167.72	-	167.72	
		6-3	6-3	테니스장 대기실	-	-	-	150.00	-	150.00	150.00	-	150.00	
	는동 설지	6-4	6-4	운동시설창고	-	-	_	18.00	-	18.00	18.00	-	18.00	
	<u> </u>	6-5	6-5	골프연습장 휴게음식점	_	_	_	73.35	-	73.35	73.35	_	73.35	
			체-	육장	57,806.0	_	57,806.0	0.00	-	0.00	0.00	_	0.00	
			소	계	62,596	-	62,596.0	693.19	_	693.19	926.07	_	926.07	

구 분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m²)			건축규모(m²)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교통 시설지	도로			73,450	-	73,450.0	-	_	-	-	-	-	
	소 계		73,450	-	73,450.0	-	-	-	-	-	-		
기타 시설지	7-1	7-1	유물발굴실습장	267	-	267.0	27.00	-	27.00	27.00	-	27.00	
	7-2	7-2	유물발굴실습장	268	-	268.0	27.00	-	27.00	27.00	-	27.00	
	7-3	7-3	유물발굴실습장 부속동	230	-	230.0	125.00	-	97.93	125.00	-	97.93	
	7-4	7-4	파쇄기보관고	1,000	-	1,000.0	80.00	-	80.00	80.00	-	80.00	
	7-5	7-5	폐시약보관창고	=	-	-	10.00	=	10.00	10.00	-	10.00	
	-	_	조경휴게지1	4,000	-	4,000	-	-	-	-	-	-	
	-	-	조경휴게지2	5,500	-	5,500	=	=	-	=	-	-	
	-	_	조경휴게지3	9,380	-	9,380	_	-	-	_	-	-	
	_	7-6	조경휴게지4- 초막셋	14,914.0	-	14,914.0	27.07	-	27.07	27.07	-	27.07	
	유보지			1,820		1,820	-	-	-	-	-	-	
	소 계			37,379.0		37,379.0	269.00	-	269.00	269.00	-	269.00	
녹 지	녹지			111,270.0	-	111,270.0	-	-	-	-	-	-	
	소 계			111,270.0	-	111,270.0	-	-	-	-	-	-	

#### ※ 변경사유

- 혁신공유대학 건물배치 변경 및 증축(건축면적 감84m², 연면적 증66m²)
- 유학생기숙사→교수연구동(B동)으로 표시변경
- 예술관 증축(건축면적 증25m², 연면적 증100m²)
- 5. 전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면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138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9호선)시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0-103호(2020.6.26.)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지곡동 32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9월 2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24-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대로2-9호선 도로확장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
  - 당초 : 대로2-9 L=470m. B=30m. A=16.337m<sup>2</sup>
  - 변경 : 대로2-9 L=470m, B=30m, A=17,139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 6. 26. ~ 2025. 12. 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당초)

순	6) <del>5</del> )	ઝો મો	지	지적	편입면	소	유자	소·	유권이외의권	년리자	ב (נו
순 번	위치	지번	목	지적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고
1	군산시 나운동	177-1	도	1,245	323	군산시					
2	"	산217	도	99	5	군산시					
3	"	산216-4	임	74	3	국(기획재정부)					
4	"	산216-5	임	1,022	1,003	국(기획재정부)					
5	"	184-2	전	636	63	한국농어촌공사					
6	"	184-6	전	356	356	군산시					
7	"	산223-5	임	463	25	유*자	부산시 남구 민락동 30-1, 107호				
8	"	산223-6	임	1,262	1,011	군산시					
9	"	산227-5	品	1,126	315	군산시					
10	"	산224-4	임	3,743	3,443	군산시					
11	"	191-46	임	703	175	군산시					
12	"	192-1	전	393	27	군산시					
13	"	192-2	전	460	66	군산시					
14	"	192-3	전	60	45	군산시					
15	"	191-35	显	159	4	군산시					
16	"	1495	도	572	418	국(농수산부)					
17	"	191-12	전	1,788	382	군산시					
18	"	191-16	전	526	13	군산시					
19	"	191-14	전	296	168	군산시					
20	"	191-42	전	259	134	군산시					
21	"	191-41	전	394	394	군산시					
22	"	산216-3	도	1,568	896	국(기획재정부)					
23	"	산216-2	도	298	236	국(기획재정부)					
24	"	174-25	임	201	76	국(기획재정부)					
25	"	산223-7	임	418	290	유*자	부산시 남구 민락동 30-1, 107호				
26	"	1517-4	도	21	21	군산시					
27	"	1517-5	도	267	267	군산시					
28	n	1517-6	도	168	152	재단법인**교대한감 리회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농업협 동조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용암동)	근저당	
29	"	1517-9	임	840	689	재단법인**교대한감 리회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순 번	위치	지번	지	지적 (m')	편입면	소	유자	소·	유권이외의권	변리자	비고
번	71/1	기원	목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111
30	군산시 지곡동	484	도	883	741	국(농수산부)					
31	"	324-28	임	93	93	김*은	전북 군산시 중앙로33-3, 104동 702호(대명동, 아이플러스시티)	주식회사 **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2	"	324-37	임	242	242	군산시					
33	"	324-14	대	109	2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 119	주식회사 **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4	"	324-15	대	263	7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 119	주식회사 **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5	"	324-36	대	58	53	군산시					
36	"	324-35	전	788	788	군산시					
37	"	324-4	전	253	104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 119	주식회사 **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8	"	324-21	도	308	98	군산시					
39	"	328-7	전	155	155	군산시					
40	"	329-2	전	86	86	군산시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Zн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m')	소	:유자	3	<b>노유권이외의</b> 귟	변리자	비고
순반		시킨	시속	(m')	(m¹)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미끄
1	군산시 나운동	177-2	도	274	274	군산시					
2	"	산216-8	임	1	1	군산시					
3	"	산216-9	임	886	886	군산시					정정
4	"	184-7	전	97	97	군산시					정정
5	"	184-6	전	356	356	군산시					
6	"	산223-8	임	33	33	군산시					
7	"	산223-9	임	1,187	1,187	군산시					
8	"	산227-7	묘	634	634	군산시					정정
9	"	산224-11	임	3,648	3,648	군산시					
10	"	191-83	임	7	7	군산시					
11	"	191-84	임	215	215	군산시					
12	"	192-4	전	38	38	군산시					
13	"	192-5	전	81	81	군산시					
14	"	192-6	전	48	48	군산시					
15	"	191-82	丑	12	12	군산시					

۸	0) =1	-1·1	-1 m	지적	펶입면전		소유자	3	_유권이외의=	권리자	,,,
순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m <sup>i</sup> )	편입면적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고
16	"	1495	도	572	572	농수산부					
17	"	191-80	전	396	396	군산시					
18	"	191-81	전	84	84	군산시					
19	"	191-42	전	259	259	군산시					
20	"	191-41	전	394	394	군산시					
21	"	산216-7	도	1,207	1,207	군산시					
22	"	산216-2	도	298	298	군산시					
23	"	174-25	임	201	201	군산시					
24	"	1517-4	도	21	21	군산시					
25	"	1517-5	도	267	267	군산시					정정
26	"	1517-12	도	142	142	군산시					
27	"	1517-13	임	674	674	전성태	<del>옥구읍 옥구동</del> 로 80-1				
28	지곡동	329-2	전	86	86	군산시					
29	"	328-7	전	155	155	군산시					
30	"	324-46	도	96	96	군산시					
31	"	324-42	전	79	79	군산시					정정
32	"	324-35	전	788	788	군산시					
33	"	324-47	대	49	49	군산시					
34	"	324-45	대	1	1	군산시					
35	"	324-44	대	4	4	군산시					정정
36	"	324-43	대	1	1	군산시					정정
37	"	324 -37	임	242	242	군산시					
38	"	324-41	임	110	110	군산시					정정
39	"	324-28	임	93	93	군산시					정정
40	"	328-13	전	1	1	채금주	내초동 18				추기
41	"	484-1	도로	269	269	농수산부					

군산시 고시 제2022-13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59호(2018.5.11.)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지곡동 1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1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9월 2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139-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

나. 명 칭 :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
  - 당 초 : L=706m, B=30m, A=19,388m²
  - 변 경 : L=706m, B=30m, A=19,824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 5. 11. ~ 2022.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당초)

-		0 2		ı .		اء ده اسا			3 -0 3 0 -2		
번	- 소 <sup>෭</sup>	İ	   지번	지	지적   면적	편입예 정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호	시	동	"	목	(m²)	(m²)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1	군산	지곡	64-4	구	859	17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	"	"	137-9	구	302	9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3	"	"	63-1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81, 103동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2	임실농업 협동조합	
4	"	"	327	답	2,992	5	805호(평화동2가,미송평화하이존아파 트)	이재규	군산시 수송동로 91, 105동 1102호(수송동,수송아이파크)	최명순	
5	"	"	128	답	1,157	416	군산시 하나운로 48, 203동401호 (나운동,롯데3차아파트)	고형구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구영4길 38(영화동)	김종희		하이트진	지분 1/2
6	"	"	128-3	답	991	63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전산로 222, 비동 1402호 (보정동,죽전신세계쉐덴)	김종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로주식회	지분 1/2
7	"	"	129	탑	1,152	554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 동영 아파트 101동 608호	장영록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37	옥구농업 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6-1 한양운남 비동 102호	전기현		0000	지분 31/10
							군산시 나운동92 금호타운아파트 201동 1204호	이두철			지분 25/10
8	"	"	129-1	답	2,466	528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김점자			지분 25/10
							전 등 전 등 전 등 100명 600로 전 두 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 1동 403호	임유정			고5/10 기분 19/1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2길 6	정만임			지분
9	"	"	132-1	답	1,912	347	군산시 중앙로 76-13(중앙로3가)	정만숙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73(유천동)	서대전농 업협동조	1/2 지원 1/2
							익산시 영등동 771-3 우미아파트	권기복		합	지분
							101동 901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1동 403호	임유정			1/8 지분 2/8
10	"	"	136-1	탑	2,025	48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43, 210동 302호(지족동,반석마을2단지)	강성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 업협동조 합	기년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서곡현대아파트 105동 601호	서은수		н	지분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 101동 402호(산천동, 리버힐삼성아파트)	박희주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 협동조합	지분 1/8
							익산시 영등동 771-3 우미아파트 101동 901호	권기복			지분 1/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1동 403호	임유정			지 년 2/8
11	"	"	136-7	답	2,025	6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43, 210동 302호(지족동,반석마을2단지)	강성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 업협동조 합	지분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서곡현대아파트 105동 601호	서은수		L L	지분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 101동 402호(산천동, 리버힐삼성아파트)	박희주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 협동조합	지년 1/8
12	"	"	128-2	답	992	120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2동 103호	손균홍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6-1 한양운남 비동 102호	전기현			지분 31/1(
							군산시 나운동92 금호타운아파트	이두철			31/10 지분 25/10
13	"	"	129-2	답	842	702	201동 1204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김점자			지분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 1동 403호	임유정			25/10 지 년 19/10
14	"	"	126-1	답	1,413	1,413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군산시 번영로 162	군산농업 협동조합	_2, 1
	소계	(14필	지)			6,080				日の十月	

번	소7	내지	20.23	지	지적	편입예 정면적	소 유 자		이해관기	계인	
이	시	동	지번	지 목	면적 (m')	정면석 (m²)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9 (효자동3가)	최웅기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지분 1157/41
15	7,1	-l =	04.1	r-l	4.100	1 405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박춘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지분 904/412
15	世代	시박	64-1	답	4,122	1,435 -	군산시 나운동 155-5 대우아파트 102동 702호	이두철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지분 904/412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루아파트 102동 801호	김경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지분 1157/41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2576/17]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98-19	문주	군산시 수송동 24-13	군산원예농업 협동조합	지분 1288/17
10	"	"	120.0	r-l.	9.145	1.020	군산시 수송동로 91, 106동 201호 (수송동,수송아이파크)	김진희			1288/17
16			136-6	답	2,145	1,030	군산시 개정동 585-20	문성희			지분 2576/17
							익산시 모현동1가 762-13	신순자			지분 4296/17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1동 902호	최경락			지분 5136/17
							군산시 부곡1길 5(나운동)	고종규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 협동조합	지분 992/71: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100	김영국			지분 114/71
							군산시 의료원로32(지곡동)	김석분			지분 545/71: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621	성용례			지분 95.5/71
							군산시 수송동로 36 103동 502호(수송동, 한라비발디1단지아파트)	한명례			지분 95.5 /7]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513-4	장정선			지분 661/71
17	"	"	137-16	다	2,221	757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5동 1102호	양경희			지분 661/71
11			137 10	н	2,221	131	군산시 나운동 155-10 동신아파트 106동 1501호	박미자			지분 661/71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주공아파트 207동 1304호	이상언			지분 661/71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02동 603호	김종기			지분 661/71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1동 110호	유호석			지분 661/7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현대아파트 104동 201호	유종성			지분 661/71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331/71:
							군산시 개정동 585-20	고치영			지분 331/71:
18	"	"	138-6	답	456	456		군산시			
19	"	"	139-6	답	793	793		군산시			
20	"	"	140-11	답	345	345		군산시			
	211	(6필:	→1 \		1	4,816					

보

번	소지	바지		지	지적	편입예	소 유 자		이해관계인		
호	시	동	지번	목	면적 (m²)	정면적( m²)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21	군산	지곡	137-17	답	654	654		군산시			
22	"	"	479-7	도	13	13	농식품부	국			
23	"	"	140-12	도	3	3	군산시 지곡동 79	강종렬			
24	"	"	479-3	도	1,893	30	농식품부	국			
25	"	"	63-7	도	155	5	군산시 지곡동 901	채상묵			
26	"	"	140-13	도	63	63		군산시			
27	"	"	산91-2	힘	793	303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0 성원아파트 101동 1304호	최규송			
28	"	"	산92	임	3,074	1,844	군산시 삼학동 271-8	최규송			
29	"	"	328-9	전	2,195	2,195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군산시 공항로 422(산북동)	서군산농업 협동조합	
30	"	"	328-6	전	1,373	44	군산시 금암동 284-12	나동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30			320 0		1,575	-11	도면에 표표 8 20 <del>1</del> 12	-10 L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나운센터지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1길 21, 902동 1003호(공릉동,청솔아파트)	남상호			지분 397/15
31	"	"	328-8	전	1,563	116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1길 21, 902동 1003호(공릉동,청솔아파트)	구성자			지분 397/15
31			320 0	- T	1,500	1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0, 102동 1805호(원효로4가,강변삼성스위트)	박귀선			지분 13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68, 101동 702호(당산동1가,진로아파트)	이선우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농 업협동조합	지분 637/15
32	"	"	328	전	1,322	663	익산시 월성동 96-28	유덕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31-4, 108호	전주파티마 신용협동조 합	
33	"	"	327-1	전	1,693	161	서울 중구 신당동 366-97 서울시니어스타워 1105호	강순남			
34	"	"	329	전	1,058	1,058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국 (군산세무 서)	
					,,,,,,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 보험공단	
35	"	"	329-1	전	3,203	759	군산시 지곡동 329-1	고병구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농 업협동조합	
36	"	"	335	전	1,818	218	군산시 축동로42, 302동1001호 (수송동, 군산수송제일오투그란데1단지)	차판순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업 협동조합	
37	"	"	127	전	1,190	363	군산시 남수송3길 22(수송동)	오종명	서울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계	(17필	지)			8,492					
	총계	(37포	[지)			19,388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번	소기	내지		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이해관계	미인	
호	시	동	지번	목	면적 (m²)	면적 (m²)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	(m²)	(m²)					
1	군산	지곡	329-6	전	894	894		군산시			
2	"	"	329-8	전	130	130		군산시			
3	"	"	329-7	전	685	685		군산시			
4	"	"	산92-1	임	1,857	1,857		군산시			
5	"	"	328-14	전	110	110		군산시			
6	"	"	328-12	전	1,241	1,241		군산시			
7	"	"	328-9	전	954	954		군산시			
8	"	"	328-10	전	638	638		군산시			
9	"	"	산91-3	임	254	254		군산시			
10	"	"	328-11	전	42	42		군산시			
11	"	"	327-3	전	155	155		군산시			
12	"	"	355-1	전	222	222		군산시			
13	"	"	127-1	전	370	370		군산시			
14	"	"	128-4	답	415	415		군산시			
15	"	"	128-5	답	124	124		군산시			
16	"	"	128-6	답	637	637		군산시			
17	и	и	129-3	답	548	548		군산시			
18	"	"	129-5	답	705	705		군산시			
19	"	"	129-4	답	519	519		군산시			
20	"	"	126-8	답	177	177		군산시			
21	"	"	126-7	답	176	176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22	"	"	126-1	답	176	176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23	"	"	126-3	답	177	177		군산시			
24	"	"	126-4	답	176	176		군산시			
25	и	"	126-6	답	354	354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26	"	"	126-5	답	177	177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27	"	"	132-53	답	339	339		군산시			
28	"	"	64-31	답	1460	1460		군산시			
29	"	"	64-33	구	164	164		군산시			
30	"	"	136-8	답	473	473		군산시			
31	"	"	136-9	답	1,058	1,058		군산시			
32	"	"	136-10	답	595	595		군산시			
33	"	"	137-19	답	760	760		군산시			
	소계	](33필	지)			16,762					

번	소기	비지	지번	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해된	관계인	비고
호	시	동	기면	목	(m²)	(m²)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112
34	군산	지곡	137-17	답	654	654		군산시			
35	"	"	137-18	답	572	572		군산시			
36	"	u	138-6	답	456	456		군산시			
37	"	u	139-6	답	793	793		군산시			
38	"	и	140-11	답	345	345		군산시			
39	"	u	137-9	구	302	9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0	"	"	63-1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1	"	u	63-3	구	360	2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2	"	и	479-3	도	1,893	30		농수산부			
43	"	и	479-7	도	13	13		농수산부			
44	"	и	140-12	도	3	3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79	김종혈			
45	"	"	140-13	도	63	63		군산시			
46	"	и	63-7	도	155	5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901	채상묵			
	소계	(13필/	५)			3,062					
	총 계	(46필	지)			19,824					

군산시 고시 제2022-144호

#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지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군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9월 2일 군 산 시 장

-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7.19	도면표시	7.01 11	위치		면 적 (m²)		ם (ני
구분	번호	구역명	Ħ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58	지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	45,219.0	-	45,219.0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ਜ	모			연장	위	치	사용	주요	7) 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구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188	15	국지 도로	47	대로2-9	나운동 1494-2	일반 도로	-	2020.11.19	
기정	중로	1	14	20~24	보조 간선	1,030	광로2-3	대로2-9	일반 도로	나운3택지	전북고41 ('95.3.28)	
기정	중로	2	13	15~18	집산 도로	850	지곡동 대로1-2	지곡동 대로2-11	일반 도로	나운3택지 지곡신시가지	전북고41 ('95.3.28)	
변경	중로	2	13	15~18	집산 도로	850	지곡동 대로1-2	지곡동 대로2-11	일반 도로	나운3택지 지곡신시가지	전북고41 ('95.3.28)	폭원 확장
기정	소로	1	475	10	국지 도로	30	중로2-13	지곡동 313-2	일반 도로	-	2020.11.19	
변경	소로	1	475	10	국지 도로	30	중로2-13	지곡동 313-2	일반 도로	_	2020.11.19	가각 변경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 2-13	중로 2-13	• 일부구간(L=10m) 폭원확장(B=증 3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로2-13호선 폭원확장 (15m∼18m → 18m)	
소로 1-475	소로 1-475	• 도로모퉁이 변경	• 중로2-13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도로모퉁이 변경	

### 2)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12	표시	.3.33=3	A) 51		면 적(m²)		최초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39	공공공지	지곡동 313-6번지 일원	599	-	599	2020.11.19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7		면적(m')			;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위 치		면적(m')		비고
2.2	41.X	7178	±78	12/3 <del>1</del>	번호	7 1	기정	변경	변경후	
					1-①	지곡동 산66번지 일원	41,830.0	-	41,830.0	공동주택용지
					1-2	나운동 174-18번지 일원	754.0	-	754.0	도로용지 (중로2-188)
	1BL	45,219.0	-	45,219.0	1-3	나운동 1494-2번지 일원	885.0	-	885.0	도로용지 (현황도로 정비)
					1-4	지곡동 606번지 일원	847.0	증) 20.0	867.0	도로용지 중로1-14 중로2-13
					1-5	지곡동 147-12번지 일원	903.0	감) 20.0	883.0	도로(소로1-475) 및 공공공지(39호)

#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刊 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_
	1 ①	건폐율	• 35% 이하	조례 60% 이하
_	1-①	용적률	<ul><li>235% 이하</li></ul>	조례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지정된 구간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 불허
주변도로 신설 및 폭원확장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및 확폭     중로2-188호선 신설(L=47m, B=15m) : 주출입도로 개설     소로1-475호선 신설(L=30m, B=10m) : 대체도로 개설     중로1-14호선 일부구간(L= 70m) 확폭개설 : B=중 4m     중로2-13호선 일부구간(L=200m) 확폭개설 : B=증 3m

#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실음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2-2416호

# 익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9월 2일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사업의 명칭 : 남중동 북부시장 공영주차장(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공사
- 2.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시 설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비고
북부시장 공영주차장	남중동 12-1번지 일원	• 면적 4,755㎡, 주차대수 107대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의 1, 익산시청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8.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익산시 남중동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 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	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년 오 	지 번	시학	역 (m²)	(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1	12-1	차	851	851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2	14-86	대	139	139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3	14-79	도	257	227	김용*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20-**				
4	14-14	차	2,054	2,054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5	14-15	대	172	172	이덕*	익산시 인북로11길16-*				
6	14-80	버	156	156	김용*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20-**				
7	14-34	차	1,156	1,156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2	소 계		4,785	4,755						

# ○ 수용할 지장물조서

비구	소리기기	ગ મો	무기이 조르	7 7 11 7 21	스라 머리	r). 6)	5	<b>트</b> 지소유자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비끄						
			주택	조적조/기와	59.14	m²									
						창고	조적조/스레이트	2.38	m²						
			주택	조적조/스레이트	15.98	m²									
							가추	스레이트	9.38	m²		학산시       인북로11길16-*			
							가추	스레이트	10.88	m²					
										화장실	조적조/슬래브	3.25	m²	-	
						세면실	조적조/슬래브	3.96	m²						
								계단	콘크리트	2	식				
			대문	철재/슬래브	1	식									
			현관	슬래브	3.84	m²									
1	ılスに	14 15	바닥포장	콘크리트	25	m²	A) El .	익산시							
1	남중동	14-15	담장	블록	8	m	이덕*	인북로11길16-*							
			화단		2	식									
			감나무		4	주									
			동백		3	주									
			석류		2	주									
			단풍		1	주									
			장미		1	주									
			수국		1	주									
			꽃사과		1	주									
			철쭉		7	주									
			기타 관상수		1	주									

익산시 공고 제2022-2417호

#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선 외 4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9월 2일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외 4개소)사업
- 사업의 명칭 : 함열읍 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2.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시 설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비고
소로2류2호		• L=74.6m, B=2m, 면적=687㎡	
소로1류8호		• L=94.3m, B=3m, 면적=186m²	
소로1류814호	함열읍 와리 687번지 일원	• L=126.3m, B=4m, 면적=511m²	
소로2류3호		• L=97.8m, B=2m, 면적=239m²	
소로1류815호		• L=125.3m, B=2~5m, 면적=45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2. 28
-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 7. 관계도서: "게재 생략"
- 8.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익산시 함열읍 와리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	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킨쏘	시 현	시크	(m²)	(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11 11
1	638-4	대	617	56	주식회사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	056-4	็	017	50	궁화신탁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	638-9	대	41	24	익산시				
3	668-5	대	135	58	에버종합건 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4	669-1	전	247	58	주식회사무 그치시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5	669-4	전	165	8	주식회사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궁화신탁 주식회사무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6	670-4	답	239	76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7	674-2	전	149	76	주식회사무 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8	686-2	전	570	8	주식회사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우리신용		근저당
9	686-5	전	969	10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日子工程	0-9	
9	000-0	신	909	104	궁화신탁				
10	686-6	전	242	110	주식회사무 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1	686-13	임	310	40	이버종합건 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12	686-44	전	40	38	주식회사무	, , , , , , , , , , , , , , , , , , , ,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3	687-1	전	3,134	104	주식회사무				
					궁화신탁 주식회사무				
14	689-2	전	165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주식회사무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5	689-5	전	165	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6	689-8	전	49	17	익산시	220(110, 2221) [ 1121]			
17	690	 전	332		주식회사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1	030	- 12	302	100	궁화신탁				
18	690-6	전	238	77	주식회사무 궁화신탁	, , , , , , , , , , , , , , , , , , , ,			
19	691	전	56	45	9산시	228(ㅋ日8, 도드고의 판에드니다)			
20	1129-39	도	170	7	국토교통부				
21	1129-47	도	803	28	국토교통부				
22	163-5	도	3,572	58	익산시				
23	196-2	답	32	31	주식회사제 일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2가 7-1			
24	196-3	유	9	9	익산시				
25	196-4	답	3	3	익산시				
26	196-7	답	2,080	39	김진구	당산면 용기리 1240			
27	196-35	답	194	2	익산시				

_		
└~		

.o. =	-1 11	-1.17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여	기외의 권리자				
번호	지 번	지목	(m²)	(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박미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길 38			59/19			
	402.00	1	100		유승명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짐대로42번길 19, 3충호(금명빌라)			40/19			
28	196-36	답	198	198	198	198	29	이영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2, 104동 704호			59/19
					진경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67, 105동 401호			40/19			
					임영묵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1, 102동 804호			144/4			
						김신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21, 102동 405호			115/4		
					한혜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27, 301동 1703호			86/47			
29	196-37	답	474	88	김홍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43, 102동 507호			14/474			
					염혜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원로 6						
					김윤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07, 102동 403호			29/4			
					고길순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봉명로 128-1			14/474 43/474 29/474 43/474 595/856 261/856			
		rl				신영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 175번길 169			595/8		
30	196-38	답	856	161	이현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409동 1301호			261/8			
31	685-4	전	18	14	익산시							
					구관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두라2길 14			1/2			
32	686-32	전	251	17	허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2길 28			1/2			
33	635-1	답	731	6	익산시							
34	670-2	도	1,506	88	익산시							
35	670-17	답	118	118	익산시							
36	670-18	답	3	3	익산시							
37	670-19	답	42	42	익산시							
38	1129-58	도	46	46	국토교통부							
39	1129-60	도	17	17	국토교통부							
40	669	전	121	121	익산시							
41	689-7	전	136	136	익산시							

정읍시 공고 제2022-1173호

### 고창~내장IC(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고창~내장IC(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9월2일정 읍 시 장

####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2공구)

나. 위 치 : 시점(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종점(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다. 사 업 량: 도로확포장 L=4.5km, B=17.5m

라. 사업 기간 : 2021년 ~ 2028년

바. 공고 장소 : 정읍시 및 입암면 게시판, 정읍시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토지조서
읍면	리	지번
임안	봉 양	524-1, 525-1, 711, 540-1, 518-1, 712, 540-2, 536-2, 509-3, 326-2, 326-3, 326-5, 326-4, 325, \(\precequt{\text{0}}\)87, 324, 324-1, 323, 539, 323-1, 322, 322-1, 539-1, 321-2, 321, 321-1, 320-1, 320, \(\precequt{\text{0}}\)88-1, 537, 325-1, \(\precequt{\text{0}}\)89, \(\precequt{\text{0}}\)90, \(\precequt{\text{0}}\)92-3, \(\precequt{\text{0}}\)90-1, \(\precequt{\text{0}}\)91, \(\precequt{\text{0}}\)120, \(\precequt{\text{0}}\)92-1, \(\precequt{\text{0}}\)94-1, 318-3, 318-2, 318-1, 317-2, 317-3, 317-1, 308-1, 316, 533, 309-4, 309-1, 309-2, 309-3, 303-5, 303-1, 301-4, 301-1, 659, 319-3, 319-2, \(\precequt{\text{0}}\)94, 308-2, 308-3, 308-4, 307, \(\preceqt{\text{0}}\)95, 307-1, 306-3, 306-1, 306-2, 303-3, 305-2, 305-1, 304-2, 304-1, \(\preceqt{\text{0}}\)97, 303-4, 303-2, \(\preceqt{\text{0}}\)98-3, 298-3, 297-1, 135-4, 133-21, 135-2, 133-22, 134-4, 533-1, \(\preceqt{\text{1}}\)100-1, 548, 133-20, 660, 134-3, 134-7, 558, 557, 300-1, 300-2, 300-3, 299-2, 298-4, 133-5, 133-14, 133-4, 133-1, 133-2, 132, 132-2, 134-2, 134-5, 569, 656, 661, 582, 583, 581, 602, 134-6, 129, 130-3, 131-4, 130-1, 120-3, 120-5, 120-5, 120-10, 144-2, 121-1, 120-4, 584, 120-7, 113-1, 147-4, 606, 147-3, 147-2, 603, 604, 662, 621, 528, 605, 622, 521-1, 521-1, 520-5, 520-4, 701, 705, 683
		물건조서
읍면	리	지번
입암	봉양	656, 548, 129

#### 3. 보상시기 : 2022년 10월 예정(추후 개별 통보)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 상액의 산정) 규정에 따라 3인(전라북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전라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감정평가업자가 평 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시와 토지소유자가 협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임.
-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 (063-539-5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열람 및 이의신청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전라북도 정읍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6. 기타사항

-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규정 등에 의거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의 해당여부 판단은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7112000±	-1-	حك	2022 1 0	/ = 4 -
다. 상기 내용에 기재 및 보상에 관한 법	되지 아니한 사항에 1률」등 관련법령에		 업을 위한 토지 등의	<b></b>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정읍시청 건설과 (0	63-539-5852)로 둔	<u>'</u> 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고시 제2022-89호

#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실효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승인조건 미이행에 따라 「관관진흥법」 제5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고시합니다.

2022. 9. 2. 김 제 시 장

#### I. 실효고시 사유

- 김제시 고시-제2014-98호(2014. 9. 12)로 승인 고시된 "김제온천 관광지 조 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 승인조건(사업 시행 전 농지보 전부담금 납부) 미이행으로 실효 고시함
- Ⅱ.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실효고시)
- 1. 사 업 명 : 김제온천 관광지
- 2. 위 치 : 김제시 상동동, 흥사동, 백산면 상정리 일원
- 3. 사업규모
- 면 적 : 533.453 m²
- 4. 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 : 1998년 ~ 2007년
- 5. 투자계획
- 투자계획 : 112,954백만원(공공 22,802 / 민자 87,152)
- 6.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

### 7. 조성계획 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2항 및 별표19에 따라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를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고시)

	구 분		면적(m')		구성비	시 설 명
	<b>丁</b> 铊	기정	변경	변경후	(%)	시 설 병
	계	533,453	-	533,453	100.0	
3.2	· - - - - - - - - - - - - - - - - - - -	139,840	-	139,840	26.2	• 주차장, 도로, 오수중계 펌프장, 배수지, 관리사무소, 화장실
슾	- 다박시설용지	36,855	-	36,855	6.9	•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샹	· 가시설용지	19,775	=	19,775	3.7	•위락 및 판매시설
관광	소 계	120,550	-	120,550	22.6	
관광 휴양 악 시 용	운동오락시설	80,265	=	80,265	15.0	• 유희시설, 수영장, 다목적운동장
용지	휴양문화시설	40,285	=	40,285	7.6	• 종합온천장, 소공원, 야외공연장, 광장
	녹지용지	216,433	_	216,433	40.6	• 보전 및 조경녹지, 기타녹지

### ○ 세부시설계획 조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2항 및 별표19에 따라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를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고시)

719	구분 시설 선호 시설명		부기	지면적(r	n²)	구성비	건축면	적(m²)	연면적	d(m²)	동수	(동)	충수	=(충)	พา
一个记	번호	시설병	기정	변경	변경후	(%)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비고
	콗	·계	533,453	-	533,453	100.00	26,165	26,165	120,075	120,075	51	51	-	ı	
		소계	139,840	-	139,840	26.21	632	632	752	752	8	8	1~2	1~2	
	1	보행통로	4,975	-	4,975	0.93	-	-	-	-	-	-	-	ı	
	2	주차장	34,900	-	34,900	6.54	-	-	-	-	-	ı	ı	ı	
공공	3	도로	96,410	-	96,410	18.07	-	-	-	-	-	ı	ı	I	
공공 편익 시설 지구	4	화장실	1,720	-	1,720	0.32	430	430	430	430	6	6	1	1	
	5	관리사무소	560	-	560	0.10	120	120	240	240	1	1	2	2	
	6	오수중계 펌프장	380	-	380	0.07	82	82	82	82	1	1	1	1	
	7	배수지	895	-	895	0.17	-	-	-	-	-	-	-	-	

				且:	지면적(r	m²)	구성비	건축면	スɨ/灬²\	연면적	1(m²)	동수	·(도)	<b>ネ</b> ク	-(충)	
구:	분	시설 번호	시설명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소계	36,855	-	36,855	6.91	13,895	13,895	86,995	86,995	20	20	5~8	5~8	
숙 <sup>1</sup> 시 자	박	8	호텔	9,370	-	9,370	1.76	3,100	3,100	24,800	24,800	1	1	8	8	
지	루	9	콘도미니엄	10,600	-	10,600	1.99	4,110	4,110	28,770	28,770	1	1	7	7	
		10	여관	16,885	-	16,885	3.17	6,685	6,685	33,425	33,425	18	18	5	5	
· 상:	가		소계	19,775	-	19,775	3.71	7,890	7,890	15,745	15,745	21	21	2	2	
상: 시· 자·	설 구	11	위락 및 판매시설	19,775	-	19,775	3.71	7,890	7,890	15,745	15,745	21	21	2	2	
			소계	120,550	-	120,550	23.60	3,748	3,748	16,583	16,583	2	2	5	5	
			계	80,265	-	80,265	15.05	180	180	720	720	1	1	4	4	
	운	12	유희시설	51,365	-	51,365	9.63	180	180	720	720	1	1	4	4	
관	농오	13	수영장	12,350	-	12,350	2.32	-	-	-	-	-	-	1	-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안동 오라 시설	14	테니스·배드민 턴장	7,700	-	7,700	1.44	-	-	-	-	-	-	_	-	
오락		15	다목적운동장	8,850	-	8,850	1.66	-	-	-	-	-	-	-	-	
설지			계	40,285	-	40,285	7.55	3,568	3,568	15,863	15,863	1	1	1	5	
구	휴 야	16	종합온천장	8,930	-	8,930	1.67	3,568	3,568	15,863	15,863	1	1	1	5	
	유 양 문 화	17	소공원	2,100	-	2,100	0.39	-	-	-	-	-	-	1	-	
	시 설	18	야외공연장	9,970	-	9,970	1.87	-	-	-	-	-	-	-	-	
		19	광장	19,285	-	19,285	3.62	-	-	-	-	-	-	-	-	
<i>7</i> 11	' 타		소계	216,433	-	216,433	40.57	-	-	-	-	-	-	-	-	
기 시· 지·	설 구	20	보전녹지 (원형녹지)	216,433	-	216,433	40.57	-	-	-	-	-	-	-	-	

# 8.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도 : 게제생략

(김제시청 도시과 비치, 일반인 열람가능)

# Ⅲ.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m³)		구성비	nj =
十 七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합계	533,453	_	533,453	100.0	
계획관리지역	533,453	-	533,453	100.0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지구명	지구의	위치 제한			면적(m	ť)	최초	间
1 1	번호	71.3	세분	ĦΛ	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기정	15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김제시 상동동, 홍사동, 백산면 상정리 일원		533,453		533,453	전북고시 제1996-439호 96. 12. 17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 적(㎡)		최초	비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15	김제 온천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김제시 상동동, 홍사동, 백산면 상정리 일원	533,453	-	533,453	전북고시 제1996-439호 96. 12. 17	

### 나.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구 분		면적(m²)		구성비	시 설 명
丁 亡	기정	변경	변경후	(%)	시설명
계	533,453	-	533,453	100.0	
공 공 편 익 시 설 용 지	90,377	증) 49,463	139,840	26.2	주차장, 도로, 오수중계 펌프장, 배수지, 관리사무소, 화장실
숙 박 시설용 지	16,383	증) 20,472	36,855	6.9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상 가 시설용 지	27,896	감) 8,121	19,775	3.7	위락 및 판매시설
관광휴양오락 시 설 용 지	182,172	감) 61,622	120,550	22.6	유회시설, 수영장, 다목적운동장 종합온천장, 소공원, 야외공연장, 광장
기 타 시설용 지	216,625	감) 192	216,433	40.6	보전 및 조경녹지, 기타녹지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
- ☑ 도로 총괄표

(단위: 개소, m, m²)

유	첢	합	계	1	류	2	류	3	류
717	'ব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13	5,387	2	1,105	-	-	11	250
합계	변경	12	4,679	9	4,319	1	110	2	250
ri) =	기정	1	934	1	934	-	-	-	-
대로	변경	1	860	1	860	-	-	-	-
중로	기정	7	3,092	1	171	-	-	6	2,921
<u> </u>	변경	7	3,067	4	2,707	1	110	2	250
소로	기정	5	1,361	-	-	-	-	5	1,361
公子	변경	4	752	4	752	1	53	-	-
보행	기정	-	-	-	-	-	-	-	-
통로	변경	5	357	_	_	_	_	_	_

# □ 도로 결정 조서

7,5	_ 급			폭위	-1.	43 =3 ( )	N -1	7 -1	사용	주요	최추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m)	시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1	35	주진입 도로	934	상동동 544-25도	상동동 471-21도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변경	대로	1	1	35	주진입 도로	860	상동동 344-5답	상동동 471 답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중로	1	1	20	국지도 로	745	흥사동 1-1 답	상동동 457-28답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중로	1	2	20	집산도 로	1,450	상동동 480 답	상정리 415-1 구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 로	171	상동동 471-17전	상동동 474-9대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변경	중로	1	3	20	집산도 로	82	상동동 174 답	상동동 471-15 대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연장 감소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 로	110	상동동 산111-1	상동동 산111-1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 로	361	상동동 471-4대	상동동 471-4대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선형 변경
변경	중로	1	4	20	집산도 로	430	상동동 471 전	상동동 469-33 전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 로	200	상동동 427-3 전	상동동 산116-2전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 로	50	상동동 427-3 전	상동동 427-3 전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폐지	중로	3	2	13	집산도 로	10	상동동 418-8전	상동동 418-8전	일반 도로		금회	
폐지	중로	3	3	12	집산도 로	653	흥사동 582 도	상동동 산143도	일반 도로		금회	
폐지	중로	3	4	12	집산도 로	1,663	흥사동 1-6전	상동동 산130-6임	일반 도로		금회	
폐지	중로	3	5	12	집산도 로	193	상동동 471-33원	상동동 산41-4임	일반 도로		금회	
기정	중로	3	6	14	특수도 로	41	상동동 474-3	상동동 474-12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명칭 변경
변경	보형	방통로	1-4	14	특수도 로	41	상동동 474-12	상동동 474-12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규 모		폭원				_ ,		주요	최초	
구분	둥급	류별	번호	(m)	기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0	상동동 469-6 전	상동동 510-1 답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32	상동동 산118-1임	상동동 산122-7임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75	상동동 427-3 전	상동동 산130-2임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35	상동동 500-2전	상동동 466-1 전	일반 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폐지	소로	3	1	5	국지 도로	70	상동동 401-3답	상동동 397-4답	일반 도로		금회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27	상동동 211-24원	상동동 211-24원	일반 도로		급회	
폐지	소로	3	3	3	특수 도로	326	상동동 211-27 원	상동동 427-5 전	보행자 전용도로		급회	
폐지	소로	3	4	3	특수 도로	315	상동동 산41-4임	백산면 상정리 418답	보행자 전용도로		금회	
폐지	소로	3	5	3	특수 도로	623	상동동 산130-1임	백산면 상정리 산111-4임	보행자 전용도로		금회	
신설	보き	방통로	1-1	16	특수 도로	136	상동동 산111-3	상동동 산108-4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보형	생통로	1-2	10	특수 도로	92	상동동 472-2	상동동 산111-4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보형	봉통로	1-3	15	특수 도로	36	상동동 474-4	상동동 474-4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신설	보형	방통로	1-5	8	특수 도로	53	상동동 469-3	상동동 466-2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 제1998-12호 98.5.27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1	대로1-1	연장변경: 934→860m	노선 종점부의 연결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에 따른 연장감소
-	중로1-1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	중로1-2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중로1-1	중로1-3	호선명 변경 연장변경: 171→82m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_	중로2-1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중로3-1	중로1-4	폭원변경: 12→20m 연장변경: 361→430m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및 노선연장
-	중로3-1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	중로3-2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중로3-2	_	노선폐지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중로3-3	_	노선폐지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중로3-4	_	노선폐지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중로3-5	_	노선폐지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중로3-6	보행통로 1-4	호선명변경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호선명 변경
_	소로1-1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1-2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1-3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_	소로1-4	노선신설	온천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 나) 주차장(변경)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m²)		최 초	비고
一工	번호	게걸정	T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포
		소계		9,153	증)25,747	34,900		
신설	1	주차장	상정리 산41-1 일원	-	증)9,940	9,940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신설	2	주차장	상동동 산112 일원	-	증)5,350	5,350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변경	3	주차장	상동동 211-13	9,113	감)1,253	7,860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신설	4	주차장	상동동 471-30	-	증)7,200	7,200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신설	5	주차장	상동동 427-3 일원	-	증)4,550	4,550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	주차장	주차장 신설	관광지 토지이용계획상 부진입도로 주변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
신설	2	주차장	주차장 신설	관광지 토지이용계획상 수영장,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
변경	3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 : 9,113 → 7,860㎡ (감 1,253㎡)	주차장 개소수 증가 및 주변도로 폭원 조정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신설	4	주차장	주차장 신설	위락 및 판매시설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
신설	5	주차장	주차장 신설	위락 및 판매시설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

- 2) 공간시설
- 가) 광장
- ◎ 광장 결정(변경) 조서

7 11	도면표시	al Almi	시설의	o) =)		면 적 (m²)		최 초	מן די
구분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소	계		_	증)19,285	19,285		
신설	1	광장	근린 광장	상동동 471 일원	-	증)7,670	7,670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신설	2	광장	교통 광장	상동동 474-9	-	증)7,272	7,272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신설	3	광장	근린 광장	상동동 산108-4 일원	-	증)1,000	1,000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신설	4	광장	근린 광장	상동동 산111-1 일원	-	증)2,380	2,380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신설	5	광장	근린 광장	상동동 산116-2 일원	-	증)963	963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	광장	광장신설	주요 시설간 완충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광장을 결정함
신설	2	광장	광장신설	종합온천장 진입광장의 필요성에 따라 광장을 결정함
신설	3	광장	광장신설	주요 시설간 완충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광장을 결정함
신설	4	광장	광장신설	북측 진입부의 유도공간의 필요성에 의해 광장을 결정함
신설	5	광장	광장신설	야외공연장 및 체육시설 간 완충공간 및 진입광장의 필요성에 의해 광장을 결정함

- 3) 유통 및 공급시설
  -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지성대	위치		면 적(m²)	최초	비고	
丁七	번호	시설명	취시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상동동 471-28 일원	909	-	909	전북고시 제1998-12호 98. 5. 27	배수지

- 4) 방재시설
  - 가) 유수지
  -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7 H	그님 도면표시 시서며		시설의	o) =1		면 적(m²)	최초	비고	
구분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폐지	1	유수지	저류 시설	상동동 211-25 일원	2,567	감)2,567	-	전북고시 제2014-98호 14.9.12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폐지	1		[/]/d] /56/m → 円/J] (lm =	상하수 공급처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저류시설이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를 결정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공공편익시설 용지

(기정)

도면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번호	(m²)	번호	위치	면적(m²)	계획대용	미끄
			1	상동동 211-13일원	9,113	주차장	
,	,	10.050	2	상동동 471-20	383	오수중계펌프장	
	A	12,972	3	상동동 471-28일원	909	배수지	
			4	상동동 211-25	2,567	유수지	

주) 공공·편익시설 중 도로(77,405m²)는 제외한 면적임

(변경)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지		ചി ജി.വി റ	w) =		
번호	번호	(m²)	번호	위치	면적(m²)	계획내용	비고		
			A-1	상정리 산41-1 일원	9,940	주차장			
			A-2	상동동 산112 일원	5,350	주차장			
			A-3	상동동 211-13	7,860	주차장			
			A-4	상동동 471-30	7,200	주차장			
		38,455	A-5	상동동 427-3 일원	4,550	주차장			
					A-6	상동동 111-1	280	화장실	
	A		A-7	상동동 산113-2	430	화장실			
	11		A-8	상동동 471-33	390	화장실			
			A-9	상동동 471-31	280	화장실			
			A-1 0	상동동 산118-1	340	화장실			
			A-1 1	상동동 471-32	560	관리사무소			
			A-1 2	상동동 471-20	380	오수중계펌프장			
			A-1 3	상동동 471-28 일원	895	배수지			

주) 공공·편익시설 중 도로(101,385㎡) 는 제외한 면적임

# 2) 숙박시설 용지

(기정)

도면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지	ની સંગો ૦	ul	
도면 번호	번호	(m²)	번호	위치	면적(m³)	계획내용	비고
1	D	10.000	1	상동동 474-3	12,166	관광호텔	
1	В	16,383	2	상동동 471-33일원	4,217	관광펜션	

(변경)

도면	가구	가구면적 (m²)	획지			ગી જી.11 ∩	wl =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m²)	계획내용	비고																																				
			B-1	상동동 471-29	9,370	호텔																																					
				B-2	상동동 산108-1 일원	10,600	콘도미니엄																																				
						B-3	상동동 427-3	1,000	여관																																		
			B-4	상동동 427-3	1,000	여관																																					
								B-5	상동동 427-3	1,000	여관																																
			B-6	상동동 427-3	1,000	여관																																					
			B-7	상동동 427-3	850	여관																																					
		36,885	B-8	상동동 427-3	760	여관																																					
							В-9	상동동 427-3	790	여관																																	
•	D.		B-1 0	상동동 427-3	650	여관																																					
1	В		36,885	30,885	30,880	36,885	30,883	30,003	30,000	B-1 1	상동동 427-3	730	여관																														
			B-1 2	상동동 211-17	1,250	여관																																					
			B-1 3	상동동 211-16	825	여관																																					
																	_	_						_												-			B-1 4	상동동 211-15	700	여관	
																																			B-1 5	상동동 211-14	880	여관					
																																					B-1 6	상동동 211-18	1,040	여관			
																									B-1 7	상동동 211-19	1,100	여관															
																														B-1 8	상동동 211-20	1,100	여관										
			B-1 9	상동동 211-21	1,200	여관																																					
			B-2 0	상동동 211-22	1,010	여관																																					

보

도

(기정)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지		-ചി ജി പി റ്	ul =
도면 번호	호 번호	(m³)	번호	위치	면적(m³)	계획내용	비고
		27,896	1	상동동 474-10일원	1,080	위락 및 판매시설	
			2	상동동 474-11일원	1,050	위락 및 판매시설	
1	С		3	상동동 474-13일원	1,050	위락 및 판매시설	
			4	상동동 474-14일원	1,050	위락 및 판매시설	
			5	상동동 471-30일원	23,666	판 매 시 설	

(변경)

도면	가구 번호	가구면적 (m²)	획지		આ જી.ાો લ	n) =	
번호			번호	위치	면적(m²)	계획내용	비고
	С	C 19,775	C-1	상동동 427-3	780	위락 및 판매시설	
			C-2	상동동 427-3	780	위락 및 판매시설	
			C-3	상동동 산116-2	780	위락 및 판매시설	
			C-4	상동동 427-3	780	위락 및 판매시설	
			C-5	상동동 427-3	900	위락 및 판매시설	
			C-6	상동동 427-3	900	위락 및 판매시설	
			C-7	상동동 474-5	1,275	위락 및 판매시설	
			C-8	상동동 474-7	1,050	위락 및 판매시설	
			C-9	상동동 474-8	1,050	위락 및 판매시설	
			C-10	상동동 474-10	1,080	위락 및 판매시설	
1			C-11	상동동 474-11	1,050	위락 및 판매시설	
			C-12	상동동 474-13	1,050	위락 및 판매시설	
			C-13	상동동 474-14	1,050	위락 및 판매시설	
			C-14	상동동 211-8	1000	위락 및 판매시설	
			C-15	상동동 211-9	1000	위락 및 판매시설	
			C-16	상동동 211-10	1000	위락 및 판매시설	
			C-17	상동동 211-11	850	위락 및 판매시설	
			C-18	상동동 211-12	850	위락 및 판매시설	
			C-19	상동동 427-3	850	위락 및 판매시설	
			C-20	상동동 427-6 일원	850	위락 및 판매시설	
			C-21	상동동 산118-1	850	위락 및 판매시설	

보

4) 관광휴양·오락시설 용지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m')	획지			નો સેના દ	w) =
			번호	위치	면적(m')	계획내용	비고
1	D	182,172	1	흥사동 1-9 일원	17,322	다목적운동장	
			2	상동동 산112 일원	141,242	골프코스	
			3	상정리 420 일원	21,096	승마체험장	
			4	상동동 473-17일원	2,512	암벽등반장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m²)	획지			-n ≈l . n ∩	ul =
			번호	위치	면적(m²)	계획내용	비고
1	D	120,550	D-1	상동동 211-24 일원	51,365	유희시설	
			D-2	상동동 산113-2 일원	12,350	수영장	
			D-3	상동동 427-24 일원	7,700	테니스· 배드민턴장	
			D-4	흥사동 564-1 일원	8,850	다목적운동장	
			D-5	상동동 427-3	2,100	소공원	
			D-6	상동동 산114-1 일원	9,970	야외공연장	
			D-7	상동동 474-3	8,930	종합온천장	
			D-8	상동동 산111-3 일원	2,380	광장	
			D-9	상동동 산108-4	1,000	광장	
			D-10	상동동 427-2 일원	963	광장	
			D-11	상동동 471 일원	7,670	광장	
			D-12	상동동 474-9	7,272	광장	

보

도

# 4) 기타시설 용지

(기정)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지		ചി കി പി മ	ul =																						
번호	번호	( m²)	번호	위치	면적(m')	계획내용	비고																						
			1	상정리 산42-1 일원	8,459	녹지용지																							
			2	상정리 산21-1 일원	809	녹지용지																							
			3	상정리 산21-1 일원	685	녹지용지																							
			4	상동동 산112 일원	2,032	녹지용지																							
			5	상동동 산116-2 일원	1,238	녹지용지																							
			6	상동동 산114-1 일원	4,378	녹지용지																							
			7	상동동 산108-3 일원	5,956	녹지용지																							
			8	흥사동 1-1 일원	3,602	녹지용지																							
			9	상정리 424-29 일원	159	녹지용지																							
			10	상정리 420 일원	681	녹지용지																							
			11	상정리 418 일원	10,309	녹지용지																							
			12	상동동 397-4 일원	515	녹지용지																							
1	E	216,625	13	상동동 397-4 일원	245	녹지용지																							
1	E	210,025	14	상정동 396-2 일원	744	녹지용지																							
			15	상동동 산130-1 일원	39	녹지용지																							
			16	상동동 471-33일원	2,338	녹지용지																							
			17	상동동 243-6 일원	3,161	녹지용지																							
				18	상동동 471-33일원	133	녹지용지																						
			19	상동동 211-27 일원	36	녹지용지																							
			20	상동동 211-25 일원	1,117	녹지용지																							
													_												21	상동동 211-24 일원	5,462	녹지용지	
			22	상동동 211-24	524	녹지용지																							
			23	상동동 211-24	544	녹지용지																							
			24	상동동 211-24 일원	76,025	녹지용지																							
			25	상동동 471 일원	2,011	녹지용지																							
			26	상동동 427-3 일원	85,423	녹지용지																							

(변경)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번호	( m²)	번호	위치	계획대중	미끄	
			E-1	상정리 420 일원	48,312	녹지	
			E-2	상정리 418-8	280	녹지	
			E-3	산108-1 일원	26,802	녹지	
			E-4	상동동 427-3	2,579	녹지	
1	E	216,433	E-5	상동동 396 일원	62,981	녹지	
	E		E-6	흥사동 1-9	34,882	녹지	
			E-7	상동동 211	7,260	녹지	
			E-8	상동동 211-23	2,250	녹지	
			E-9	상동동 243 일원	26,805	녹지	
			E-10	상동동 211-25	4,282	녹지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1) 공공편익시설

도면 번호	위치	시설명	항	목	계 획 내 용							
			do 1	허용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10% 이하							
	A-1		용	적율	10% 이하							
	~ A-5	주차장	높	이	최고1층 이하							
			배	최	도면참조							
			형	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	채	-							
			건국	축선	-							
			1 ob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사목 공중화장실							
1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화장실	건 5	폐율	60% 이하							
			용	적율	200% 이하							
	A-6		높	이	2층 이하							
	~ A-10		배	치	도면참조							
	A-10		형	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	채	<ul> <li>벽면 및 외관의 채색은 원색의 사용을 배제하며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상계열을 사용</li> <li>자연 및 전통재료(황토, 목재, 자연석 등)에 의한외관 처리시 색채규정제외</li> </ul>							
			건축	축선	-							
			용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관광 휴게시설 중 바목(공원, 유원지 또 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을 위한 시설							
	A-11	관리사무소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보

도면 번호	위치	시설명	항	목	계 획 내 용
			건기	폐율	40% 이하
			용 :	적율	100% 이하
			높	0]	2층 이하
			배	최	도면참조
			형	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	채	<ul> <li>벽면 및 외관의 채색은 원색의 사용을 배제하며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상계열을 사용</li> <li>자연 및 전통재료(황토, 목재, 자연석 등)에 의한 외관 처리시 색채규정 제외</li> </ul>
			건축선		_
			1 olo	허용	하수도법 제2조 3호에 의한 하수도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기	폐율	40% 이하
		오수중계	용	적율	40% 이하
	A-12	펌프장	높 이		최고1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 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 채		-
			건*	축선	-
			용 도	허용	수도법 제3조 17호에 의한 수도시설
			포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되	폐율	40% 이하
		n 2 -1	용	적율	40% 이하
	A-13	배수지	높	$\circ \rceil$	최고1층 이하
			배	최	도면참조
			형	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	채	-
			건축	축선	-

# 2) 숙박시설

도면 번호	위치	시설명	항목	계획내용
			용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목의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
			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50% 이하
				300% 이하
			높 이	최고8층 이하
			배치	건축물의 전면이 도로방향과 계획 용지 형태에 적정하도록 배치하여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숙박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
1	B-1	호텔	형	지붕 및 옥탑 -지붕의 경우 지붕의 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등)은 평균 17층고(3m)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연도록 할 것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원칙적으로 슬라브형태를 불허하며, 경사지붕을설치(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경사형이 아니다라도 옥상 면적의 1/2이상 녹화를 실시한 경우와 조형성 있는 지붕형다도입시 경사형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옥상에 특별한 용도를 부여할 경우 제외담장 -담장설치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가시철망 등은 사용를불허하며, 생울타리, 석담, 목책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 -담장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외벽의 재료 -외벽은 지역 특유의 친근감을 주고 자연미를 표현하는 재료의 사용등권장하며 몰탈 마감과 철근노출 및 미완성 상태의 마감은 불허하며 사물질 사용을 지양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근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있게 계획
			색채	주조색의 색상은 가급적 원색을 지양하고 혼합색을 자유롭게 선정하며, 건물이 지나치튀지 않도록 고명도(7.5 이상), 저채도(2.5 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시킴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위해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사용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 3m

도면 번호 위치		시설명	ĕ	상목	계획내용							
			용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요건을 갖춘 휴양 콘도미니엄							
			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율	50% 이하							
			용	적율	300% 이하							
			노	- 0]	최고7층 이하							
			нJ	최	건축물의 전면이 도로방향과 계획 용지 형태에 적정하도록 배치하여 채광, 통풍 등 쾌적 숙박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							
1	B-2	콘도미니 엄	85	! 태	지붕 및 옥탑  -지붕의 경우 지붕의 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등)은 평균 1개 층. (3m)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원칙적으로 슬라브형태를 불허하며, 경사지붕을 설.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경사형이 아니더라도 상 면적의 1/2이상 녹화를 실시한 경우와 조형성 있는 지붕형태 도입시 사형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담장  -담장설치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가시철망 등은 사용을 불하는며, 생울타리, 석담, 목책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  -담장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외벽의 재료  -외벽은 지역 특유의 친근감을 주고 자연미를 표현하는 재료의 사용을 권하며 몰탈 마감과 철근노출 및 미완성 상태의 마감은 불허하며 반사물·사용을 지양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있게 계획							
			۵	박 채	주조색의 색상은 가급적 원색을 지양하고 혼합색을 자유롭게 선정하며, 건물이 지나치게 튀 않도록 고명도(7.5 이상), 저채도(2.5 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시킴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사용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							

E면 번호	위치	시설명	ā	항목	계획내용
			용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아목의 요건을 갖춘 관광펜션
			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율	50% 이하
			용	·적율	200% 이하
			2	ē 0]	최고5층 이하
			н	내 치	건축물의 전면이 도로방향과 계획 용지 형태에 적정하도록 배치하여 채광, 통풍 등 쾌 숙박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
B-3 1 ~ B-20	B-3 ~ B-20	여 관	Ö	5 태	지붕 및 옥탑  -지붕의 경우 지붕의 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등)은 평균 1개 등 (3m)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것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원칙적으로 슬라브형태를 불허하며, 경사지붕을 속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경사형이 아니더라도 상 면적의 1/2이상 녹화를 실시한 경우와 조형성 있는 지붕형태 도입시 사형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담장  -담장설치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가시철망 등은 사용을 불하며, 생울타리, 석담, 목책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  -담장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외벽의 재료  -외벽은 지역 특유의 친근감을 주고 자연미를 표현하는 재료의 사용을 급하며 물탈 마감과 철근노출 및 미완성 상태의 마감은 불허하며 반사들 사용을 지양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있게 계획
			ž	백채	주조색의 색상은 가급적 원색을 지양하고 혼합색을 자유롭게 선정하며, 건물이 지나치게 말 않도록 고명도(7.5 이상), 저채도(2.5 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시킨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약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사용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

## 3) 상가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치	시설명	항	목	계 획 내 용
			용모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마목(종교집회장 제외), 아목 차목, 타목제16호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불 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율	50% 이하
			용:	적률	150% 이하
			높	0]	최고3층 이하
			明	치	건축물의 전면이 가급적 도로방향(동향) 또는 남향으로 건축 되도록 배치하여 채광, 통풍 쾌적한 상가시설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
1	C-1 ~ C-21	위락 및 판매시설	졍	태	지붕 및 옥탑  -지붕의 경우 지붕의 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등)은 평균 1개 층고(3m)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첫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원칙적으로 슬라브형태를 불허하며, 경사지붕을 설치(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경사형이 아니더라도 옥상 면적의 1/2이상 녹화를 실시한 경우와 조형성 있는 지붕형태 도입시 경사형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담장  -담장설치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가시철망 등은 사용을 불허하며, 생울타리, 석담, 목책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  -담장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외벽의 재료  -외벽은 지역 특유의 친근감을 주고 자연미를 표현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몰탈 마감과 철근노출 및 미완성 상태의 마감은 불허하며 반사물목사용을 지양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있게 계획

***	도면 번호	위치	시설명	항 목	계 획 내 용
1				색채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1	~			옥외광고물의 설치가능 수량은 1업소당 2개 이하의 간판 설치 허용 옥외광고물의 외관에는 미관을 훼손하는 LED 발광선· 조명튜브·네온 및 사인볼 등 불필요 부착물 금지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여야 하 합판, 비닐, 슬레이트, 함석 등의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 사용 금지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 간판만을 허용 -건축벽면 가로폭의 80%이내, 최대 10m 이내에서 입체형 간판만 허용하는 세로 크기는 최대 60cm 이내로 표시 돌출형 간판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표시하고, 2개 이상 설치시 돌출폭은 일치시 -세로 크기는 건물의 1개층 높이를 고려하여 1.0m 이내로 설치하고, 두께는

### (4) 관광휴양·문화시설

도면 번호	위치	시설명	č	항목	계획내용
			용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사목의 요건을 갖춘 온천장
			도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율	50% 이하
			용	적율	200% 이하
			굴	· 이	최고 6층 이하
			刊	치	건축물의 전면이 도로방향과 계획 용지 형태에 적정하도록 배치하여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온천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
1	D-7	종합온천 강	Öğ	<b>!</b> 태	지붕 및 옥탑  -지붕의 경우 지붕의 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등)은 평균 1개 층고 (3m)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원칙적으로 슬라브형태를 불허하며, 경사지붕을 설치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경사형이 아니더라도 옥상 면적의 1/2이상 녹화를 실시한 경우와 조형성 있는 지붕형태 도입시 경사형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담장  -담장설치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가시철망 등은 사용을 불허하며, 생울타리, 석담, 목책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  -담장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외벽의 재료  -외벽은 지역 특유의 친근감을 주고 자연미를 표현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몰탈 마감과 철근노출 및 미완성 상태의 마감은 불허하며 반사물질 사용을 지양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있게 계획
			2	백채	주조색의 색상은 가급적 원색을 지양하고 혼합색을 자유롭게 선정하며, 건물이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고명도(7.5 이상), 저채도(2.5 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시킴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사용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

-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게재생략(김제시청 도시과 비치, 일반인 열람가능)

임실군 고시 제2022-64호

# 사선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고시

전라북도 관광총괄과-8296호(2022.08.26)와 관련하여 사선대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된 사항을 「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관련도서는 임실군청 관광치즈과(관광개발팀 063-640-2604)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임 실 군 수 2022년 9월 2일

- I. 사선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 가. 관광지명: 사선대 관광지 "변경없음"
- 나. 위 치: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덕천리 일원 "변경없음"
- 다. 관광지 지정 면적: 166,000 m² "변경없음"
- 라. 사업기간: (당초)1996. ~ 2020.12.31

(변경)1996. ~ 2025.12.31. (5년 연장)

- 마. 사 업 비: 35,632백만원 "변경없음"
- 바.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광장, 펜션, 음식점, 휴게소, 수영장, 다목적운동장, 기념탑, 청소년수련원 등
- 사. 사업시행자: 임실군수 "변경없음"
- 아.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
- 토지이용계획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m')		구성비	시 설 명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중감	(%)	시 설 명
합	계	166,000	166,000	-	100.0	
공공편익시설 지구	공공편익시설 지구	30,777	30,777	-	18.5	매표소,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광장, 도로
숙박시설 지구	숙박시설 지구	6,746	6,746	-	4.1	펜션, 목재숙박체험장
상가시설 지구	상가시설 지구	5,468	5,468	-	3.3	음식점 및 휴게소, 매점, 토속주점
운동오락시설 지구	코 코 중 아	46,333				강수영장, 보트장, 번지점프, 수영장, 유기장, 숲체험장(챌린저), 다목적운동장
휴앙문화시설 지구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52,869	52,869 99,202		59.7	물레방아, 기념탑, 잔디광장, 연못, 피크닉장, 청소년수련원, 사선루각, 목재문화체험장, 느티나무쉼터
기타시설 지구	기타시설 지구	23,807	23,807	-	14.4	- -

도

# ○ 관광지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석	번호		부 지	踔	전(m²)			시설	구 모(m²)			동	수	층	수	
용도 구분	시설구분	16		위 치			/ (III /	건	축면	적	건축	추연도	면적	( =	동)	Ů		J. H.
1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	-	-	166,000	-	166,000	11,604.21	-	11,604.21	21,441.77	-	21,441.77	48	48	_		
	소 계	-	-	-	30,777	,	30,777	744.27	-	744.27	884.21	-	884.21	7	7	-		
	매표소	1	1	덕천리 481-5	80		80	50.00	-	50.00	50.00	-	50.00			]		
	관리사무소	2	2	관촌리 222	1,898	1	1,898	139.94	-	139.94	279.88	-	279.88			2	2	
	주차장	3-1	3-1	관촌리 222	660	,	660	-	-	-	-	-	-	-	-	-	-	
공공	주차장	3-3	3-3	덕천리 481-5	4,000		4,000	-	-	-	-	-	-	-	-		-	
	화장실	4-1	4-1	관촌리 222	532	-	532	84.87	-	84.87	84.87	-	84.87			]		
편익	화장실	4-2	4-2	덕천리 786-19	300	-	300	65.90	-	65.90	65.90	-	65.90	-	-	]		
시설	화장실	4-3	4-3	덕천리 481-6	240	-	240	72.28	-	72.28	72.28	-	72.28			1		
, -	화장실	4-4	4-4	덕천리 481-6	125	-	125	72.28	-	72.28	72.28	-	72.28			1	]	
지구	화장실	4-5	4-5	관촌리 1010-12	391	-	391	259.00	-	259.00	259.00	-	259.00			1		
	광장	5-1	5-1	덕천리 481-6	1,695	-	1,695	_	-	_	_	-		-	-	-		
	광장	5-2	5-2	-	730	-	730	-	-	_	-	-	-	_	-	-	-	
	광장	5-3	5-3	관촌리 222	441	-	441	-	-	-	-	-	-	-	-	_	-	
	도로	-	-	-	19,685	-	19,685	-	-	=	=	-	-	-	-	-	_	
	소 계	-	-	-	6,746		6,746	2,548.12	-	2,548.12	6,228.12	-	6,228.12	ć	(	-	-	
숙박	펜션	6-1	6-1	덕천리 481-1	615	-	615	447.00	-	447.00	1,341.00	-	1,341.00	1		3	3	
	펜션	6-2	6-2	덕천리 481-25	683	-	683	405.00	-	405.00	1,215.00	-	1,215.00			69	3	
시설	펜션	6-3	6-3	덕천리 481-3	920	-	920	498.00	-	498.00	1,494.00	-	1,494.00	:		9	3	
지구	펜션	6-4	6-4	덕천리 481-26	958	-	958	490.00	-	490.00	1,470.00	-	1,470.00		:	3	-	
1 1	목재숙박 체험장	7	7	덕천리 481-20	3,570		3,570	708.12	-	708.12	708.12	-	708.12	Ę	Ę	1		
	<u>세월경</u> 소 계	-	-	-	5,468		5,468	3,005.25	-	3,005.25	5,937.00	-	5,937.00	12	12	-	$\overline{}$	Γ
	음식점	8-1	8-1	관촌리 1010-10	567	-	567	297.75	-	297.75	570.00	-	570.00			2	2	
	음식점	8-2	8-2	덕천리 786-24	368	-	368	320.00	-	320.00	640.00	-	640.00			2	2	
상가	음식점	8-3	8-3	덕천리 786-25	306	-	306	153.00	-	153.00	306.00	-	306.00	:		2	- 2	
	음식점	8-4	8-4	덕천리	428	-	428	214.00		214.00			428.00			2		
	매점	8-5	8-5	786-27 덕천리	266	_	266	165.00	-	165.00	330.00	-	330.00			2		
시설	음식점,유선		8-6	786-26 관촌리	440		440	243.00	_	243.00	487.00	_	487.00			9		Г
	장,매표소 단란주점,	8-7		1,010-11 덕천리	302		302	151.00		151.00			302.00			1		
	매점,음식점 음식점및		8-8	786-23 덕천리	427		427	264.00					528.00			- 4		
지구	휴게소 음식점및			786-31 덕천리						264.00					-	4		
	휴게소		8-9 8-1	481-6 덕천리	1,350		1,350	665.00		665.00	,		1,330.00		-	]	$\dashv$	
		8-10	0	786-29 덕천리	405	-	405	202.50	-	202.50	405.00	-	405.00		2	2		L
	음식점	8-11	1 1	덕선디   786-28	609		609	330.00	_	330.00	611.00	_	611.00	]		2	. 4	

용도 구분			21.24	비송		н	z] pł zł	(2 )		,	시 설	규 모(m	<sup>2</sup> )		동	수	2	人	1
		시설구분	시설	번호	위 치	무	지 면 적	( m <sup>*</sup> )		선축면적			건축연면격	넉	(동)		층수		1
,	<u>u</u>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OL
	합	계	-	-	-	166,000		166,000	11,604.21		11,604.21	21,441.77		21,441.77	48	48	-		,
		소 계	-	-	-	-	증)99,202	99,202	-	증)5,306.57	5,306.57	-	증)8,392.44	8,392.44		20	-		
		소 계	-	-	-	46,333	감)46,333	-	806.30	감)806.30	-	806.30	감)806.30	-	4	-			
		강수영장	9-2	9-2	덕천리 786-18	11,903	-	11,903	-	-	-	_	-	-	-	_	-		
		보트장 (스케이 트장)	9-3	9-3	덕천리 786-18	12,214		12,214	_	I	-		I		ı		-		
운동		번지점프	9-4	9-4	덕천리 786-19	451	=	451	=	=	1	=	-	=		_	-		
오락 시설 지구		유기장	9-5	9-5	덕천리 481-6	6,788	-	6,788	48.00	_	48.00	48.00	_	48.00	1	1			
, ,		X게임장	9-6	9-6	덕천리 481-6	3,830	-	3,830	200.00	-	200.00	200.00	_	200.00	1	1			
		수영장	9-7	9-7	덕천리 481-6	4,630	_	4,630	500.00	-	500.00	500.00	=	500.00	1	1			
		술체험장 (챌린저)	9-13	9-13	관촌리 222	3,312	-	3,312	-		-	_	-	-		_	-		
	관광	다목적		9-14	과초리	3,205	_	3,205	58.30	_	58.30	58.30	_	58.30	1	1	:		
	휴 양 오 락	소 계				52,869	감)52,869	-	4,500.27	감)4,500.27	_	7,586.14	감)7,586.14	_	16	-	-	_	
	오덕 시설 지구	물레방아	10-1	10-1	덕천리 786-21	60	-	60	18.50	_	18.50	18.50	-	18.50	1	1	-		
		기념탑	10-2	10-2	덕천리 786-20	1 ×0	_	80	80.00		80.00	80.00	-	80.00	1	1	-		
		잔디광장	10-3	10-3	관촌리 222	11,876	-	11,876	-	_	_	_		-	_	_	-		
		연못	10-4	10-4	관촌리 222	2,728	-	2,728	_	_	-	_	_	-		_	-		
휴양 문화		숲 쉼터	10-5	10-5	관촌리 222	2,522	_	2,522	_		_	_	=	_	_	_	-		
시설 지구		느티나무 쉼터	11	11	덕천리 481-6	7,523	_	7,523	_		_	_	_			_	-		
		피크닉장	12	12	덕천리 481-6	1,173	-	1,173	_	-	-	_	-	_		_	-		
		청소년 수련원	13	13	덕천리 481-10	20,890	-	20,890	3,267.93	-	3,267.93	6,353.80	-	6,353.80	4	4	3		
		사선루각	14	14	관촌리 222	598	-	598	200.00	-	200.00	200.00	-	200.00	1	1	:		
		목재문화 체험장	15	15	덕천리 481-13	5,419	-	5,419	933.84	-	933.84	933.84	-	933.84	9	9	:		
녹	· 지 '	및 기타	-	_		23,807		23,807	_	_		_	_				-		

Ⅱ.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유원지 조성계획 조서 및 도면: "변경없음"(실음생략)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2호

##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 □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16.
- □ 공고내용
  - 1. 관련근거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항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1(과태료)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 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의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어 붙임 1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설치 및 보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붙임 2 서식에 의해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 가능한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 과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 4. 또한, 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9)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2-339호 조 치 명 령 서 성명: 코앞 관계인 (각 소유주, 대표) 수령인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 코앞A관 관계인(소유주, 대표) 개별 주소 대상: 코앞 A관 조치명령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 대상 <u>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u> 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재안전기준(NFSC) 내용: **붙임참고**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조치명령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구분 ○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 유도등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기타설비 - 방화문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2. 8. 20. - 2022. 10.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2년 8월 16일

# 전주덕진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A관]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ul> <li>* 소화기구</li> <li>1. 소화기 불량</li> <li>- 3층 애플짐헬스장 소화기(충압불량 1개, 내구연한 4개)</li> <li>- 2층 코앞 포차 앞 복도 소화기(내구연한 1개)</li> <li>- 1층 세븐일레븐 편의점 소화기(충압불량 1개, 내구연한초과 1개)</li> <li>2. 소화기 미비치</li> <li>- 3층 드라이빙존 소화기 미비치</li> <li>- 1층 동창닭갈비 주방화재용소화기 미비치</li> <li>* 스프링클러설비</li> <li>1. 펌프 불량</li> <li>- 주펌프 토출 측 플랜지이음(플렉시블 조인트) 부분 배관누수</li> <li>- 예비펌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스위치) 불량</li> <li>2. 밸브 불량</li> <li>- 지하 1층 알람밸브 템퍼스위치 불량</li> <li>- 지하 2층 건식밸브 세팅 불능</li> </ul>	보수요함	NFSC 101 NFSC 103
경보 설비	<ul> <li>* 자동화재탐지설비</li> <li>1. 감지기 미작동</li> <li>1층 탑폰매장 감지기 2개소 선로단선 미작동</li> <li>지하 1층 중앙이용학원 감지기 1개소 탈락</li> <li>2. 지구경종 불량</li> <li>1층 1F-2 소화전함 지구경종 불량</li> <li>* 비상방송설비</li> <li>1. 비상방송 미출력</li> <li>지하 2~3층, 지상 2~9층 비상방송 미출력</li> </ul>	보수요함	NFSC 202 NFSC 203
피난 구조 설비	<ul> <li>※ 유도등</li> <li>1. 유도등 미점등</li> <li>1. 유도등 미점등</li> <li>- 3~4층 계단통로유도등(벽부소형 →방향)</li> <li>- 5~6층 계단통로유도등(벽부소형 →방향)</li> <li>- 1층 중앙계단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li> <li>- 지하주차장 1층~차량출입구 통로유도등(벽부소형→방향)</li> <li>- 1층 전대탄탄 부동산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li> <li>- 지하 1층 중앙이용학원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li> <li>- 지하 1층~1층 계단 통로유도등(벽부소형←방향)</li> <li>- 2층 코앞커피숍 매장 내 비상구 피난구유도등</li> </ul>	보수요함	NFSC 303

피난 구조 설비	<ul> <li>※ 피난기구</li> <li>1. 완강기 창문파괴장치 미비치</li> <li>- 4~9층(6개소) 완강기 창문파괴장치 미비치</li> <li>※ 안전시설(피난기구)</li> <li>1. 피난사다리 위치표시 표지 탈락</li> <li>- 2층 코앞커피숍 매장 내 비상구 피난사다리 위치표시 표지 탈락</li> </ul>	보수요함	NFSC 301
소화 활동 설비	<ul> <li>※ 제연설비</li> <li>1. 제연설비 휀름실 적재품 비치</li> <li>- 지하 1층 휀름실 적치물 제거 요함</li> </ul>	보수요함	NFSC 501
기타 시설	<ul> <li>※ 피난방화시설 (방화문)</li> <li>1.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li> <li>- 지하 2층 계단 전실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li> <li>2. 방화셔터 기동 불능</li> <li>- 2층 화장실(2F-4소화전함) 계단 방화셔터 퓨즈 단선으로 기동 불능</li> </ul>	보수요함	소방시설법 제10조

■ 회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7. 26.>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생년	월일	(8)	
신청인	주소		(전	화번호		)
	건물명(업체명)	용도구분	등급 [ ]특급	[ ]1급 [	]2급 [	]공공기관
	주소	1	'	화번호		)
신청내용	연기기간					
	연기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점부서류 점부서류 지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조치명령 기간만료 → 접수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5일전까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처리기관: 시·도 (소방업무담당부서)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3호

##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 □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16.
- □ 공고내용
  - 1. 관련근거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항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1(과태료)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 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의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어 붙임 1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설치 및 보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붙임 2 서식에 의해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 가능한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 과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 4. 또한, 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9)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2-340호 조 치 명 령 서 성명: 코앞 B관 지하층 소유주 귀하 수령인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4 지하층 소유주 개별주소 대상: 코앞 B관 1통 조치명령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4 대상 <u>소유자</u>・관리자・점유자 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재안전기준(NFSC) 내용: **붙임참고**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조치명령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구분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2. 8. 20. - 2022. 10.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2년 8월 17일

# 전주덕진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B관 1동]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ul> <li>* 소화기구</li> <li>1. 소화기 불량</li> <li>- 지하 1층 4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li> <li>- 지하 2층 5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li> </ul>	보수요함	NFSC 101
경보 설비	<ul> <li>* 자동화재탐지설비</li> <li>1. 회로 선로 단선</li> <li>- 지하 1층 감지기 선로 단선으로 감지기 미작동</li> <li>- 지하 1층 발신기 불량(1개소)</li> </ul>	보수요함	NFSC 203
피난 구조 설비	<ul> <li>※ 유도등</li> <li>1. 유도등 미점등</li> <li>- 지하 1층 4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li> <li>- 지하 1층 5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li> </ul>	보수요함	NFSC 303

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7. 26.>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생년월일	(8)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건물명(업체명)	용도구분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공공기관
	주소	T:	.1	(전화번호	)
신청내용	연기기간				
	연기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 수수료 첨부서류 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재 결과 통지 처리기관: 시·도 (소방업무담당부서) 신청민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4호

##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 □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16.
- □ 공고내용
  - 1. 관련근거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항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1(과태료)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 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의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어 붙임 1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설치 및 보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붙임 2 서식에 의해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 가능한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 과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 4. 또한, 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9)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2-341호

# 조 치 명 령 서

	!
	성명: 코앞 B관 지하층 소유주 귀하
수령인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3, 지하층 소유주 개별주소
	대상: 코앞 B관 2동
조치명령 대상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3
	<u>소유자</u> • 관리자 · 점유자
	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재안전기준(NFSC)
	내용: <b>불임참고</b>
조치명령	○ 소화설비 - 소화기구 
구분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2. 8. 20 2022. 10.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2년 8월 17일

# 전주덕진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B관 2동]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 소화기구 1. 소화기 불량 - 지하 1층 3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	보수요함	NFSC 101
경보 설비	<ul> <li>※ 자동화재탐지설비</li> <li>1. 회로 선로 단선</li> <li>지하 1층 회로 선로 단선으로 감지기 미작동</li> </ul>	보수요함	NFSC 203
피난 구조 설비	* 유도등 1. 유도등 미점등 - 지하 1층 3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	보수요함	NFSC 303

도 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7. 26.>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sile.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
	건물명(업체명)	용도구분	등급 [ ]특	f급 [ ]1급 [	]2급 [ ]공·	공기관
	주소	E		(전화번호		)
신청내용	연기기간					
	연기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학	방				
	1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 수수료 첨부서류 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재 결과 통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기관: 시·도 (소방업무담당부서)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5호

##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 □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16.
- □ 공고내용
  - 1. 관련근거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항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1(과태료)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 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의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어 붙임 1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설치 및 보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붙임 2 서식에 의해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 가능한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 과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 4. 또한, 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9)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2-342호 조 치 명 령 서 성명: 코앞 B관 지하층 소유주 귀하 수령인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2, 지하층 소유주 개별주소 대상: 코앞 B관 3통 조치명령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2 대상 <u>소유자</u>・관리자・점유자 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재안전기준(NFSC) 내용: **붙임참고**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조치명령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구분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2. 8. 20. - 2022. 10.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2년 8월 17일

# 전주덕진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B관 3동]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ul> <li>※ 소화기구</li> <li>1. 소화기 불량</li> <li>- 지하 1층 2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li> </ul>	보수요함	NFSC 101
경보 설비	<ul> <li>※ 자동화재탐지설비</li> <li>1. 감지기 미작동</li> <li>- 지하 1층 감지기 선로 단선으로 감지기 미작동</li> <li>2. 지구경종 불량</li> <li>- 지하 1층 지구경종 불량(1개소)</li> </ul>	보수요함	NFSC 203
피난 구조 설비	※ 유도등 1. 유도등 미점등 - 지하 1층 2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	보수요함	NFSC 3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7. 26.>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생년월일	(8)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건물명(업체명)	용도구분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공공기관
	주소	T:	.1	(전화번호	)
신청내용	연기기간				
	연기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 수수료 첨부서류 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재 결과 통지 처리기관: 시·도 (소방업무담당부서) 신청민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2-6호

##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 □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16.
- □ 공고내용
  - 1. 관련근거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항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1(과태료)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 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의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어 붙임 1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설치 및 보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붙임 2 서식에 의해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 가능한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 과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 4. 또한, 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9)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도

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2-343호

# 조 치 명 령 서

	성명: 코앞 B관 지하층 소유주 귀하
수령인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1, 지하층 소유주 개별주소
조치명령	대상: 코앞 B관 4동
대상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1
	<u>소유자</u> ・관리자・점유자
	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재안전기준(NFSC)
	내용: <b>붙임참고</b>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조치명령 구분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2. 8. 20 2022. 10.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2년 8월 17일

# 전주덕진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B관 4동]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ul> <li>* 소화기구</li> <li>1. 소화기 불량</li> <li>- 지하 1층 1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li> </ul>	보수요함	NFSC 101
경보 설비	<ul> <li>* 자동화재탐지설비</li> <li>1. 감지기 미작동</li> <li>- 지하 1층 감지기 선로 단선으로 감지기 미작동</li> <li>2. 지구경종 불량</li> <li>- 지하 1층 지구경종 불량(1개소)</li> </ul>	보수요함	NFSC 203
피난 구조 설비	* 유도등 1. 유도등 미점등 - 지하 1층 1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증형) 미점등	보수요함	NFSC 303

도 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7. 26.>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입	일자	<b>*</b>	리기간 3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물명(업체명)	용도구분	등급 [ ]특급 [ ]1급 [ ]	2급 [ ]공공기관
주소	E	, (전화번호	)
연기기간			
연기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	항		
	성명 주소 건물명(업체명) 주소 연기기간 연기사유	주소       건물명(업체명)       용도구분       주소       연기기간	정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물명(업체명) 용도구분 등급 [ ]특급 [ ]1급 [ ] 주소 (전화번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 수수료 첨부서류 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재 결과 통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기관: 시·도 (소방업무담당부서)